

제 출 문

충청남도의회 귀하

본 보고서를 「충남 이주민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지원정책 제안 : 고려인 교육지원을 중심으로」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10.

충남연구원 원장 유 동 훈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1

제1절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내용	4
제2절 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5

제2장 충남 체류 이주민 현황과 지원정책 7

제1절 재외동포	9
1. 재외동포	9
2. 고려인	10
제2절 국내 이주민	11
1. 국내 체류 이주민	11
2. 충남 체류 이주민	16
3. 충남 체류 재외동포	23
제3절 국내 체류 이주민 정책	35
1. 이주민 지원정책 관련 법	35
2. 재외동포 관련 법·제도 현황	39
3. 재외동포 정부지원 기관 현황	41
제4절 타 시도의 고려인에 대한 정착지원	43
1. 경기도	43
2. 인천광역시	45
3. 광주광역시	47
4. 충청남도	49

제3장 연구방법 51

제1절 연구대상 선정 및 분석	53
1. 연구대상 선정	53
2. 연구대상별 질문 구성	53
3. 연구대상별 면담 방법 및 절차	54
4. 연구분석 틀 구성	55

제2절 연구내용	57
1. 면접대상자별 면담 항목	57

제4장 연구결과 61

제1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63
1. 충남 체류 재외동포 고려인 대상별·지역별	63
2. 충남 체류 재외동포 교육기관의 한국어교원 및 교사	67
3.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의 취업기관	68
제2절 한국체류를 위한 노력	69
1. 재외동포의 한국어 교육 배경	59
2.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70
3. 동반가족 배우자(F-1)	74
4. 동반가족 자녀(F-1)	76
5. 한국어 교육기관 한국어교원 및 교사	78
6.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의 취업기관	82
제3절 재외동포 고려인의 한국어와 한국문화수요	83
1. 충남 체류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의 교육	83
2. 충남 체류 동반(F-1)배우자, 자녀 교육	84

제5장 충남 체류 고려인의 정착지원 방안 87

제1절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	89
1. 재외동포의 노동현장에서의 의사소통	89
2. 노동현장에서의 안전교육 지원	90
제2절 재외동포 고려인 자녀 교육의 중요성 인식	91
1. 재외동포 고려인 자녀 교육지원	91
2. 재외동포 고려인 자녀의 보육지원	93
제3절 고려인을 위한 전문기관설치 및 운영방안 마련	96
1. 고려인의 정착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96
2. 재외동포지원센터의 운영지원	97

제6장 결론 및 제언 101

제1절 결론	103
1. 충남 체류 고려인의 유입 증가	103
2. 충남 체류 고려인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노력	105
제2절 제언	107
1. 충남 체류 고려인의 실태조사	107
2. 충남 체류 고려인의 교육 및 보육지원	108
3. 재외동포 고려인을 위한 전문기관	109

표 목차

[표 1] 국내 체류 외국인 연도별 증감 추이	11
[표 2] 등록 외국인 거주지별 현황	12
[표 3] 등록 외국인 국적별 현황	13
[표 4]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감 추이	13
[표 5] 등록 외국인 자격별 현황	14
[표 6] 외국 국적 동포 거소신고자 국적별 현황	15
[표 7] 외국 국적 동포 거소신고자 거주지역별 현황	15
[표 8] 외국 국적 동포 거소신고자 충남 현황	18
[표 9] 등록 외국인 거주지별 현황	18
[표 10] 충남 등록 외국인 연령별 현황	19
[표 11] 충남 등록 외국인 20세 이하 2019년, 2020년 연도별 증가현황	20
[표 12] 다문화 학생 가족 유형별 시·도별 현황	21
[표 13] 충남 중도입국 자녀 유형별 현황	22
[표 14] 충남 중앙아시아·러시아 등록 외국인 지역별 현황	25
[표 15] 충남 등록 외국인 지역별 현황	26
[표 16] 충남 방문취업자 지역별 현황	27
[표 17] 충남 지역별 재외동포 동거(방문동거) 현황	28
[표 18] 충남 다문화 학생 유형별 현황	28
[표 19] 충남 지역별 다문화가정 학생현황	29
[표 20] 충남 지역별 다문화 학생현황	30
[표 21] 충남 다문화 학생 학교별 현황	31
[표 22] 충남 초등학교 외국인 학생 현황	32
[표 23] 충남 중등학교 외국인 학생 현황	33
[표 24] 충남 전체학생과 다문화 학생비율	33
[표 25] 충남 다문화 학생 유형별 현황	34
[표 26] 충남 외국인 학생 부모 출신국 현황	34
[표 27] 재외동포 관련 법 현황	40
[표 28] 재외동포 관련업무 내용	40
[표 29] 재외동포 자녀의 체류허용 확대	41
[표 30] 재외동포를 위한 부처별 교육지원	42
[표 31] 이민자를 위한 정부지원 기관	42
[표 32] 재외동포 대상별 인터뷰	58
[표 33] 연구 대상별·지역별 재외동포	63
[표 34] 연구 대상자 재외동포(F-4)의 일반적 사항	64
[표 35] 연구 대상자 방문취업(H-2)의 일반적 사항	65

[표 36] 연구 대상자 동반가족(F-1, 배우자)의 일반적 사항	65
[표 37] 연구 대상자 동반가족(F-1, 자녀)의 일반적 사항	66
[표 38] 한국어 교육기관 한국어교원의 일반적 사항	67
[표 39] 학교 교육기관 교사의 일반적 사항	68
[표 40] 취업기관의 면접자의 일반적 사항	68
[표 41] 한국 입국 전·후 한국어 교육경험	70
[표 42] 직장동료와의 대화 시 어려움	71
[표 43] 직장 내 안전 교육	72
[표 44] 지속적인 삶을 위한 노력	73
[표 45] 자녀교육을 위한 노력	73
[표 46] 자녀 학교생활을 위한 부모역할	75
[표 47] 동반가족자녀(F-1)의 친구 관계	76
[표 48] 동반가족자녀(F-1)의 학교 적응의 어려움	77
[표 49] 동반가족자녀(F-1)의 한국어 선생님	78
[표 50] 동반가족자녀(F-1)의 이중언어선생님	78
[표 51] 한국어 강사와 이중언어(러시아)강사 채용 유무	81
[표 52] 한국어 강사와 이중언어(러시아)강사의 수업 시수	81
[표 53] 한국학교 적응과 한국어학습 향상에 미치는 요소	82

그림 목차

[그림 1] 계획의 수립절차	6
[그림 2]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현황	12
[그림 3] 충남 다문화 학생 연도별 현황	21
[그림 4] 중도입국과 외국인 자녀의 증가	21
[그림 5] 전국 학생 대비 충남 거주 다문화 학생 비율	22
[그림 6] 충남 다문화 학생 지역별 현황	23
[그림 7] 재외동포 취업절차 흐름도	24
[그림 8] 방문취업 사증 흐름도	25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배경 및 목적
제2절 범위 및 방법



제1절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1) 충남 체류 고려인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노력

- 충남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동반, 가족초청 등으로 가족 단위의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이주민 중 고려인은 고향으로의 이주이며 고향에서의 지속적인 체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입국 시 가족동반 입국이 이루어지고 있음
- 충남 체류 고려인은 특정 지역에 함께 집단 거주형태를 이루어 생활하고 있으며 자녀를 동반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음
- 이처럼 자녀와 함께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은 자녀교육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충남에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기관으로 결혼이주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지원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이 있으나 고려인의 센터 이용은 매우 적음
- 충남 체류 고려인은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근로현장에서 한국어의 부족으로 동료들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함

2) 충남 고려인 자녀의 학교 교육지원

- 자녀교육이 한국학교에서 한국어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녀의 학교교육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임
- 또한, 한국어의 부족으로 학습부족과 또래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처럼 고려인이 정착을 위해 찾은 곳은 충남이며 충남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됨

2. 연구의 목적

1) 고려인의 충남 정착지원방안 마련

- 충남 체류 고려인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지원정책으로 고려인의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을 받아 근로현장에서의 동료들과의 의사소통을 해결
- 근로현장에서 사고발생 위험요인 감소를 위한 노력으로 근로현장 수칙 및 규율 준수를 위한 한국어능력 수준 도달

- 자녀의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갖고 살펴볼 수 있는 수준의 한국어 능력이 요구됨
- 충남 체류 고려인의 정착지원과 정착지원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요구됨

2) 고려인 자녀의 교육지원

- 고려인 자녀 대상으로 한국 입국 전 한국어 교육의 부재로 한국 입국 후 학교에서 한국어의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는 학습수준 저하와 또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중도입국으로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고려인 자녀를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지원 필요

3) 고려인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

- 한국 체류 고려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본 요건으로 한국어 교육 의무화
- 근로현장에서의 근로를 위한 안전 교육 체계화
- 고려인 자녀의 또래관계 형성과 학교 적응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이중언어 교육

3. 연구의 내용

- 1) 충남 체류 고려인의 현황파악과 그들의 한국문화 습득 정도를 파악하여 한국어 교육 지원의 방향설정
- 2) 충남 체류 고려인의 근로현장에서의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 및 한국어 교육
- 3) 충청남도에서 고려인의 한국 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고려인 대상 지원 기관 운영 마련 요구

제2절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1) 시간적 범위 : 2021년

2)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3) 내용적 범위

- 충남 체류 고려인의 현황 파악
 - 고려인과 그들의 자녀 체류 현황
 - 이주민 관련 정책 분석
 - 충남 이주민 관련 조례 분석
- 충남 체류 고려인과 고려인 자녀교육 실태분석
 - 고려인의 한국체류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참여조사
 - 근로현장에서의 전문용어와 안전교육 참여조사

2. 연구방법

1) 문헌조사

- 고려인 실태 파악 및 고려인 체류 관련 부처별 지원정책 등 관련 문헌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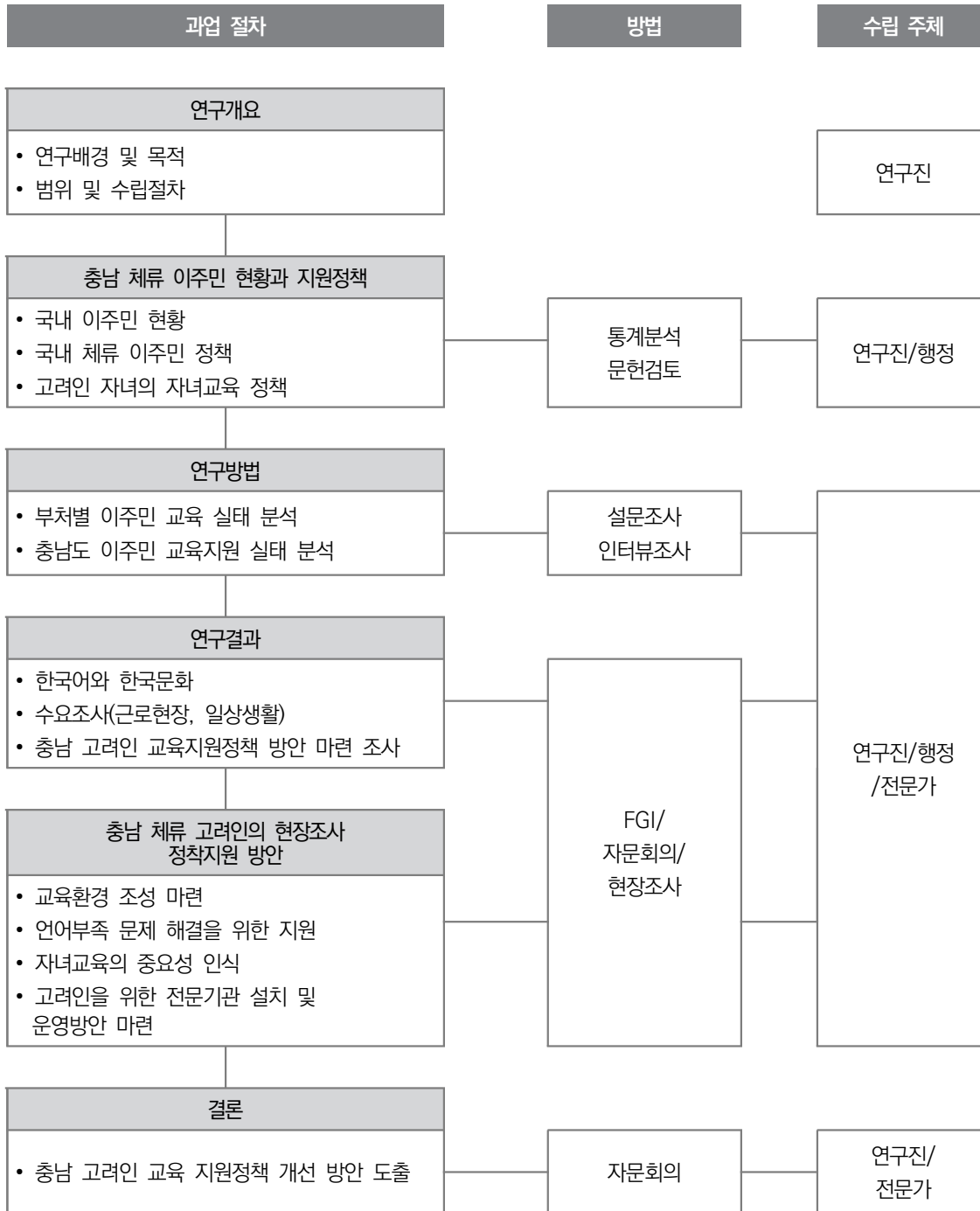
2) 면담실시

- 충남에 체류 중인 고려인과 그들의 자녀, 교육기관 종사자,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면담

3) 전문가 자문회의

-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면담 결과와 전문가 집단 등 각계 의견 수렴

3) 과업추진 체계



[그림 1] 계획의 수립절차

제2장

충남 체류 이주민 현황과 지원정책

제1절 재외동포

제2절 국내 이주민

제3절 국내 체류 이주민 정책

제4절 타 시도 고려인에 대한 정착 지원



제1절 재외동포

1. 재외동포

1) 재외동포 정의¹⁾

■ 재외동포

-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동포, 교포·해외동포라고 함

■ 재외동포의 범위

- 재외국민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이주민과 체류자
- 외국 국적 동포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민족의 일원

2) 법령에 의한 재외동포

■ 법령에 의한 재외동포의 범위²⁾

- 「재외동포재단법」 제2조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제2호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 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1) 네이버 지식백과

2) 재외동포재단법 제2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3조

2. 고려인

1) 고려인 정의³⁾

■ 고려인

-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국가에 주로 거주하면서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민족 동포. 고려사람
-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자

■ 고려인의 범위

- 현재의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키르기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 등)으로 이주한 이와 그 친족을 가리킴
- 한국인이라는 의미의 러시아어인 ‘카레이츠(Кореицы)’라고도 부름

2) 고려인 한국 이주⁴⁾

■ 소련의 해체에 따른 주변국가로의 이주

- 1991년 소련이 해체됨에 따라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독립국가가 됨
- 중앙아시아에 체류 중인 고려인은 독립 이후 장기적인 실업으로 러시아나 주변국가와 한국으로의 국제이주를 시작하게 됨
- 1998년 러시아는 국가체무불이행(디폴로) 선언함에 따라 고려인은 한국으로의 이주가 확대됨

3) 네이버 지식백과

4) 김병혁(2018), ‘이주고려인의 서울정착을 위한 대책’, 서울연구원.

제2절 국내 이주민

1. 국내 체류 이주민

1) 국내 체류 외국인현황

■ 국내 체류 외국인 추이

- 법무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2월 기준 약 252만 여명이 한국에 체류하였으나 2020년 12월 기준으로 약 203만 여명이 체류하고 있음.
- 코로나19의 상황이 지속되면서 한국 체류 외국인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7월 기준으로 약 197만 여명이 체류하고 있음
- 장기 체류 외국인의 등록은 2018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19년 이후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장기 등록 외국인은 2019년 1,271,807명이었으나 2021년 7월 1,192,738명으로 179,066명이 감소하였음
- 외국 국적 동포의 거소신고는 증가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입국을 원하는 외국 국적 동포가 증가하고 있음
-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인 2019년과 2020년에 4,787명이 증가하였으며, 2021년 7월 현재에도 꾸준히 증가하며 6,029명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등록 외국인 연도별 증감 추이

- 2015년에서 2019년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증가하였으나 2020년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9년 1,271,807에 비해 2021년 7월 179,069명 감소하여 1,092,738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 국내 체류 외국인 연도별 증감 추이

(단위 : 명)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7월
인 원	1,143,087	1,161,677	1,171,762	1,246,626	1,271,807	1,145,540	1,092,738
전년대비증감률	4.7%	1.6%	0.9%	6.4%	2.0%	9.9%	-4.6%

출처: 법무부(2021년 7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 등록 외국인 거주 지역별 현황

- 등록 외국인은 경기, 서울, 충남, 인천, 경남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충남의 거주 외국인은 세종시 4,951명 포함하여 66,705명임
- 등록 외국인은 1,092,738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 등록 외국인 거주지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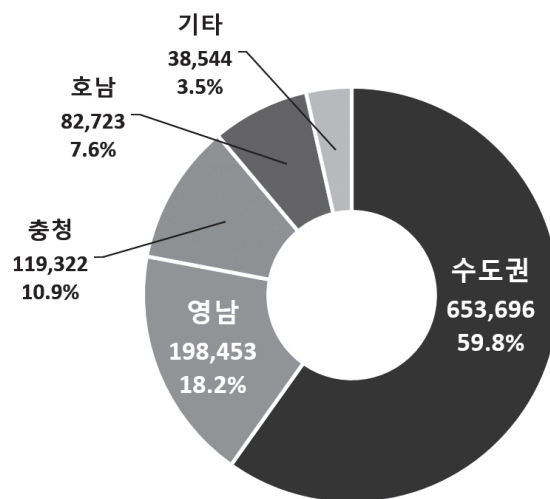
(단위 : 명)

계	경기	서울	충남 ⁵⁾	인천	경남	경북	부산	충북
	361,131	227,112	66,705	65,453	64,140	51,132	39,293	35,639
1,092,738	전남	전북	대구	제주	광주	강원	대전	울산
	31,882	30,143	26,958	21,452	20,698	17,092	16,978	16,930

출처: 법무부(2021년 7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 외국인의 거주지역으로 수도권이 653,696명 59.8%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영남 198,453명 18.2%, 충청 119,322명 10.9%로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음

(단위 : 명)



[그림 2] 등록 외국인 거주지역별 현황

출처: 법무부(2021년 7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5) 세종특별자치시 4,951명 포함

■ 등록 외국인 거주 지역별 현황

- 등록 외국인 국적별 현황으로는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필리핀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 중 중국 429,103명, 우즈베키스탄 44,873명으로 각각 39.3%,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재외동포의 수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 등록 외국인 국적별 현황

(단위 : 명)

국적별	계	중 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필리핀	네 팔	기타
인 원	1,092,738	429,103	180,399	44,873	39,732	38,523	35,995	324,113
비 율	100%	39.3%	16.5%	4.1%	3.6%	3.5%	3.3%	29.7%

출처: 법무부(2021년 7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표 4]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감 추이

(단위 : 명)

연도	총 계	장기 체류			단기체류
		소 계	등 록	거소신고 ⁶⁾	
2010년	1,261,415	1,002,742	918,917	83,825	258,673
2011년	1,395,077	1,117,481	982,461	135,020	277,596
2012년	1,445,103	1,120,599	932,983	187,616	324,504
2013년	1,576,034	1,219,192	985,923	233,269	356,842
2014년	1,797,618	1,377,945	1,091,531	286,414	419,673
2015년	1,899,519	1,467,873	1,143,087	324,786	431,646
2016년	2,049,441	1,530,539	1,161,677	368,862	518,902
2017년	2,180,498	1,583,099	1,171,762	411,337	597,399
2018년	2,367,607	1,687,733	1,246,626	441,107	679,874
2019년	2,524,656	1,731,803	1,271,807	459,996	792,853
2020년	2,036,075	1,610,323	1,145,540	464,783	425,752
2021년 7월	1,974,141	1,563,550	1,192,738	470,812	410,591

출처: 법무부(2021년 7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6) “외국 국적 동포” 거소신고 현황

■ 등록 자격별 외국인 현황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등록별 현황을 살펴보면 비전문취업(E-9), 영주(F-5), 방문취업(H-2), 결혼이민(F-6), 방문동거(F-1)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1)의 자녀로 국내에 체류하는 이들의 자녀는 주로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과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으로 생활하고 있음
- 이 외에도 거주(F-2)와 영주(F-5) 그리고 결혼이주(F-6)자의 가족으로 국내 입국하는 경우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이 부여됨

■ 등록 외국인 자격별 현황

- 등록 외국인 자격별 현황을 살펴보면 방문취업(H-2) 132,599명으로 재외동포자의 체류가 많음을 알 수 있음
- 재외동포의 동반가족으로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자는 42,441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5] 등록 외국인 자격별 현황

(단위 : 명)

계	문화예술 (D-1)	유 학 (D-2)	일반연수 (D-4)	종 교 (D-6)	상사주재 (D-7)	기업투자 (D-8)	무역경영 (D-9)	교 수 (E-1)
	26	103,708	48,087	1,247	998	5,669	2,060	2,111
	회화지도 (E-2)	연 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계절근로 (E-8)	비전문취업 (E-9)
1,092,738	12,535	3,193	196	292	2,920	19,656	254	216,169
	선원취업 (E-10)	방문동거 (F-1)	거 주 (F-2)	동 반 (F-3)	영 주 (F-5)	결혼이민 (F-6)	방문취업 (H-2)	기 타
	17,242	93,809	42,441	19,552	164,722	132,236	132,599	71,016

출처: 법무부(2021년 7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 국내 외국인 동포 현황

■ 국내 외국인 동포 현황

[표 6] 외국 국적 동포 거소신고자 국적별 현황

(단위 : 명)

총 계	중 국	미 국	러시아	캐나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기 타
470,812	353,308	42,302	24,477	15,516	14,440	6,197	12,519

출처: 법무부(2021년 7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국 국적 동포의 거소신고자의 국적별 현황으로는 중국이 353,308명으로 가장 많으며 미국, 러시아, 캐나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실질적인 국내 체류 외국 국적 동포는 878,439명으로 매년 3만 명에서 10만 명씩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의 상황을 맞이한 2020년 외국 국적 동포는 811,211명으로 전년 대비 7.7% 감소하였음
- 외국 국적 동포를 국적·지역별로 보면 중국이 81.7%(662,845명)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미국 5.4%(44,039명), 우즈베키스탄 3.9%(31,962명), 러시아 3.3%(26,871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⁷⁾
- 외국 국적 동포 거소신고자 거주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7월 기준 470,812명으로 경기, 서울, 인천, 충남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7] 외국 국적 동포 거소신고자 거주지역별 현황

(단위 : 명)

계	경기	서울	인천	충남 ⁸⁾	충북	경남	경북	울산
470,812	198,657	140,646	31,155	27,045	13,548	12,870	8,533	6,325
	부산	광주	대구	전북	전남	강원	제주	대전
	6,276	4,760	4,697	3,486	3,402	3,267	3,132	3,013

출처: 법무부(2021년 7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국 국적 동포 거소신고자 중 고려인으로 추정되는 한국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벨로루시 등의 국적을 지니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나타내었음

7) 법무부(2021), 출입국 통계, 외국 국적 동포.

8) 세종특별자치시 1,303명 포함

[표 8] 외국 국적 동포 거소신고자 충남 현황

(단위 : 명)

지역	한국계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벨로루시	합계
계룡	1	-	-	-	-	-	-	-	1
공주	9	18	-	1	-	-	-	-	28
금산	6	6	-	3	-	-	-	-	15
논산	105	64	19	4	2	1	-	-	195
당진	240	103	55	29	2		-	-	429
보령	-	2	-	-	-	-	-	-	2
부여	2	6	1	-	-	-	-	-	9
서산	285	73	105	9	2	-	1	-	475
서천	4	-	2	-	-	-	-	-	6
아산	2,097	1,105	641	136	40	41	10	2	4,072
예산	47	17	11	2	1	-	1		79
천안	231,108	2,1398	746	4314	31	11	31	11	
청양	14	2	6	-	-	-	-	-	22
태안	6	2	2	-	-	-	-	-	10
홍성	129	29	47	24	1	-	-	-	230
충청남도	3,284	1,738	969	265	52	44	16	4	6,372

출처: KOISIS(국가통계포털) 시·군·구별 체류기간별 외국인 주민 현황 2021년 5월.

2. 충남 체류 이주민

1) 충남 체류 외국인 현황

■ 충남 등록 외국인 현황

- 충남 등록 외국인은 66,971명으로 경기, 서울 다음으로 충남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외국 국적 동포 거소신고자 거주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 체류 외국 국적 동포는 27,045명으로 경기, 서울, 인천, 충남 순으로 네 번째로 외국 국적 동포가 체류하고 있음

[표 9] 등록 외국인 거주지별 현황

(단위 : 명)

경기	서울	충남 ⁹⁾	인천	경남	경북	부산	충북
363,505	231,140	66,971	65,834	64,842	51,442	40,033	35,726
전남	전북	대구	제주	광주	울산	대전	강원
31,990	30,529	27,547	22,108	21,203	17,157	17,237	16,951

출처: 법무부(2021년 4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 충남 등록 외국인 연령별 현황

- 법무부의 지역 외국인 연령별 현황으로 충남 등록 외국인은 66,971명으로 경기, 서울 다음으로 충남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충남 등록 외국인 연령별 현황 [표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천안이 18,188명으로 가장 많은 수의 외국인이 등록 체류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아산은 16,972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당진 서산, 논산 순으로 외국인 등록 체류가 많음
- 충남 등록 외국인은 연령별로는 20~29세가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30~39세, 40~49세 순으로 외국인이 많이 체류하고 있음

[표 10] 충남 등록 외국인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지역	전연령 총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룡	209	2	2	67	49	30	46	13
공주	1,991	36	62	830	554	215	214	80
금산	2,148	17	27	1,298	454	195	112	46
논산	3,865	77	68	1,674	1,194	444	294	114
당진	5,450	107	47	999	1,348	534	363	86
보령	2,859	17	29	974	1,120	497	174	49
부여	1,118	4	9	394	422	140	120	29
서산	4,078	230	120	1,143	1,151	698	579	157
서천	1,277	4	8	479	487	213	69	30
아산	16,972	1,336	825	5,123	4,972	2,505	1,766	442
예산	2,208	45	30	621	726	304	234	68
천안	18,188	1,024	824	5,327	5,292	2,719	2,358	644
청양	623	5	5	215	209	74	93	22
태안	1,384	14	9	378	525	306	119	33
홍성	2,356	64	52	862	754	307	240	67

출처: 법무부(2021). 2020년 등록 외국인 지역별·연령별 현황 통계 재구성

- 충남 체류 외국인 자녀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충남 등록 외국인의 연령 20세 이하 외국인 자녀는 아산이 2,16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천안, 서산, 당진, 논산 순으로 체류하고 있음

- 2020년 코로나19의 상황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줄어든 것과 같이 충남 체류 외국인의 수도 줄었으며 그들의 자녀의 수도 함께 줄어들
- 충남 체류 0~19세의 외국인 자녀는 아산(2,267명), 천안(2,256명), 서산(422명), 당진(335명), 논산(175명) 등의 순으로 체류하고 있음

[표 11] 충남 등록 외국인 20세 이하 2019년, 2020년 연도별 증가현황

(단위 : 명)

지역	2019년	2020년	증가
계룡	6	4	-2
공주	124	98	-26
금산	102	44	-60
논산	175	145	-30
당진	335	154	-181
보령	58	46	-12
부여	21	13	-8
서산	422	350	-72
서천	23	12	-11
아산	2,267	2,161	-106
예산	87	75	-12
천안	2,256	1,846	-410
청양	8	10	+2
태안	16	23	+7
홍성	127	116	-11
충청남도	6,027	5,097	-930

출처: 법무부. 2019년, 2020년 등록 외국인 지역별·연령별 현황 통계 재구성

2) 충남 체류 다문화자녀 현황

■ 충남 체류 다문화 자녀 가족 유형별 현황

- 국제결혼자녀로 국내 출생과 중도입국 자녀가 있으며 외국인 가정자녀로 부모 출신국별에 따라 나타나고 있음
- 2020년 충남 다문화가족 유형별 현황에서 국내출생 자녀는 5,383명이며, 중도입국 자녀는 495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국제결혼 가족 유형별로 국내출생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로 분류할 수 있음

- 국내 출생자녀는 경기 26,588명, 서울 12,656명, 경남 10,469명, 충남 8,465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중도입국 자녀는 경기 2,894명, 서울 1,728명, 인천 718명, 충남 495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도입국 자녀는 경기도, 서울, 충남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충남에 중도입국 자녀들의 분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12] 다문화 학생 가족 유형별 시·도별 현황

(단위 : 명)

시도	총계		가족유형별					
			소계		국내출생		중도입국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합계	147,378	72,857	122,925	60,751	113,774	56,106	9,151	4,645
서울	18,301	9,129	12,656	6,336	10,928	5,483	1,728	853
부산	6,252	3,139	5,890	2,971	5,427	2,732	463	239
대구	4,746	2,450	4,315	2,225	4,007	2,059	308	166
인천	8,852	4,412	6,654	3,353	5,936	2,980	718	373
광주	3,867	1,902	3,232	1,550	3,070	1,471	162	79
대전	3,032	1,510	2,835	1,424	2,675	1,343	160	81
울산	3,264	1,602	2,916	1,443	2,734	1,335	182	108
세종	741	372	688	335	623	298	65	37
경기	36,411	17,942	26,588	13,009	23,694	11,538	2,894	1,471
강원	4,649	2,288	4,496	2,214	4,333	2,129	163	85
충북	6,144	3,033	5,383	2,675	5,021	2,504	362	171
충남	9,994	4,902	8,465	4,185	7,970	3,930	495	255
전북	7,720	3,744	7,512	3,642	7,273	3,524	239	118
전남	9,634	4,701	9,437	4,608	9,142	4,471	295	137
경북	10,060	4,942	9,354	4,590	9,077	4,446	277	144
경남	11,452	5,681	10,469	5,186	10,009	4,957	460	229
제주	2,259	1,108	2,035	1,005	1,855	906	180	99

출처: 한국 교육개발원(2020), 교육통계서비스 재구성

■ 충남 체류 다문화 자녀 국적별 현황

- 국제결혼자녀로 국내 출생과 중도입국 자녀가 있으며 외국인 가정자녀로 부모 출신국별에 따라 나타나고 있다.
- 국제결혼자녀 중 국내 출생 자녀는 우즈베키스탄 102명, 러시아 43명, 중앙아시아 36명이며 지역별로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 홍성 순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음
- 국제결혼자녀 중 중도입국 자녀는 우즈베키스탄 24명, 러시아 13명, 중앙아시아 11명이며, 지역별로는 아산, 천안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외국인가정 자녀의 경우 부모 출신국별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341명, 러시아 290명, 중앙아시아 259명이며 지역별로는 아산, 천안, 논산, 당진, 홍성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충남에서 국제결혼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의 국적으로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중앙아시아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13] 충남 중도입국 자녀 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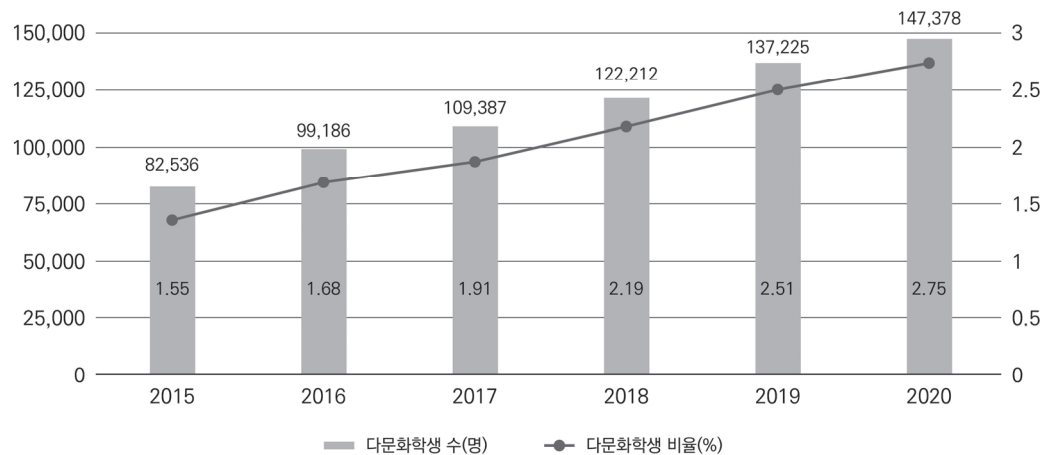
(단위 : 명)

	국제결혼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국내출생			중도입국					
	부모 출신국별			부모 출신국별			부모 출신국별		
	중앙아시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천안시	12	19	26	10	5	2	83	36	56
공주시	2	2	6	-	1	1	-	-	2
보령시	-	2	-	-	-	-	-	-	-
아산시	2	7	21	-	2	17	132	171	220
서산시	8	-	9	-	3	-	4	23	11
논산시	-	2	7	1	-	1	12	19	26
계룡시	-	-	-	-	-	-	-	-	-
금산군	-	-	2	-	-	-	-	-	1
부여군	-	3	6	-	-	-	-	-	-
서천군	1	-	3	-	-	-	-	-	-
청양군	-	-	2	-	-	-	-	-	-
홍성군	5	1	6	-	1	1	3	3	2
예산군	5	2	3	-	1	1	3	3	2
태안군	-	2	2	-	-	2	-	-	-
당진시	1	3	9	-	-	-	15	16	16

출처: 한국 교육개발원(2020), 교육통계서비스 재구성

■ 충남 다문화 학생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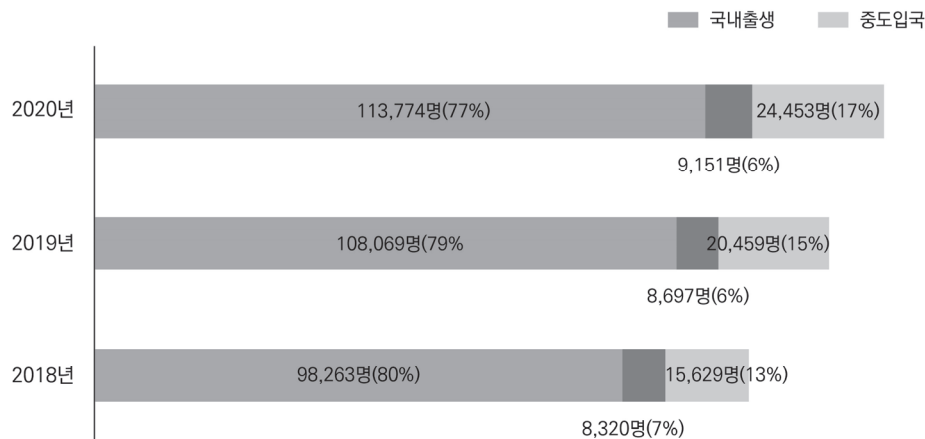
- 충남 체류 다문화 학생은 일반 학생 대비 지속적인 상승과 최근 5년간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로 2020년에는 다문화 학생은 14만명을 초과하였음



[그림 3] 충남 다문화 학생 연도별 현황

출처: 교육부(2021),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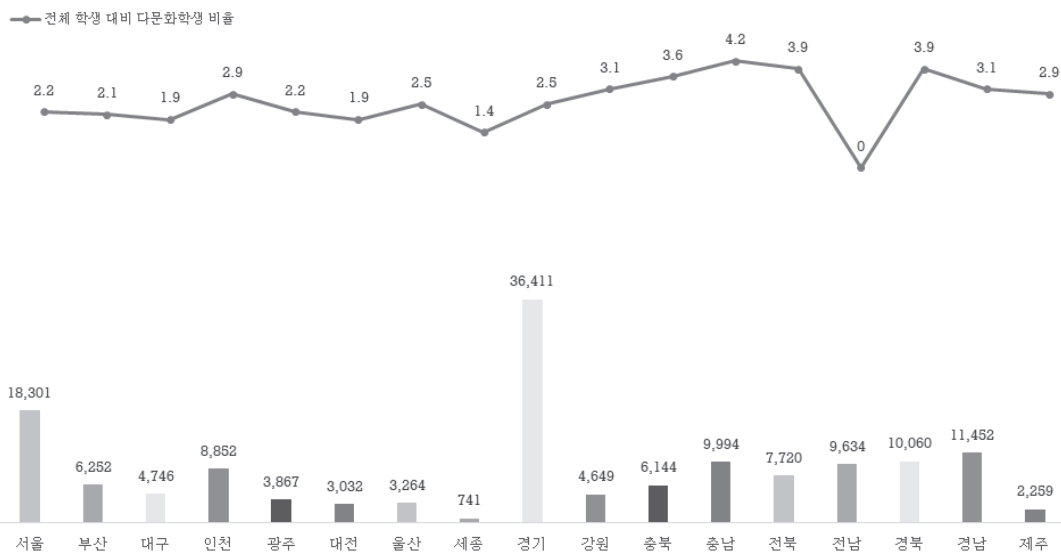
- 국내출생·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이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중도입국 외국인 학생의 증가로 20년 전년 대비 약 15%의 외국인학생 증가
-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그들의 자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19년까지 외국인과 중도입국 자녀가 증가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감소가 나타나고 있음



[그림 4] 중도입국과 외국인 자녀의 증가

출처: 교육부(2021),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 다문화 학생은 경기도와 서울에서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비율이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나고 있음
- 충남 체류 외국인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이들은 한국에서 거주(F-1)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음
- 중도입국 자녀들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생활하다가 부모의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체류에 의해 입국하는 경우가 있음
- 또한 부모입국 시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경우도 있음
- 고려인 자녀는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본국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
- 이러한 경우 한국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언어 습득의 어려움으로 또래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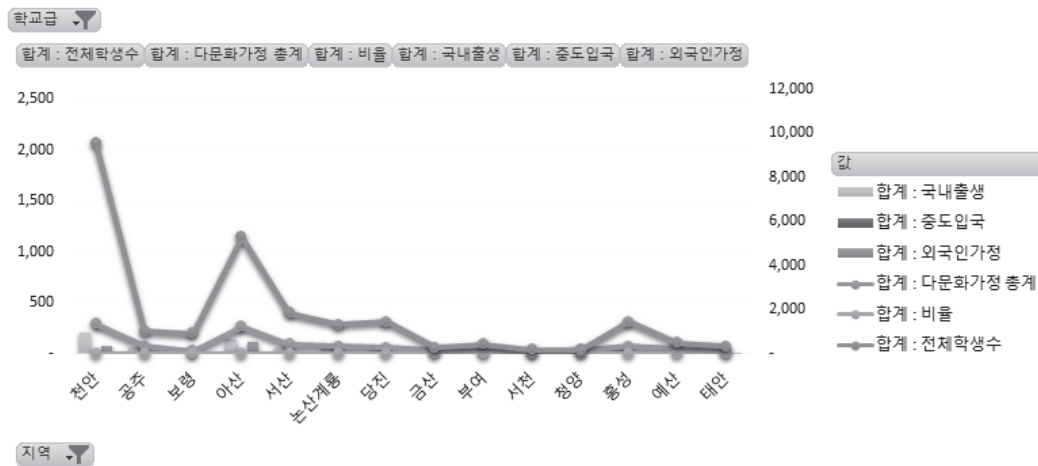


[그림 5] 전국 학생 대비 충남 거주 다문화 학생 비율

출처: 교육부(2021),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 충남 지역별 다문화가정 학생현황

- 충남의 다문화가정의 학생은 천안, 아산, 서산, 논산·계룡, 홍성, 당진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인구 대비로 살펴볼 때 청양, 금산, 예산, 태안, 공주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충남 다문화 학생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6]과 같음



[그림 6] 충남 다문화 학생 지역별 현황

출처: 충남교육청제공(2021년 4월 1일)

3. 충남 체류 재외동포

1) 재외동포와 고려인의 정의

■ 대한민국의 재외동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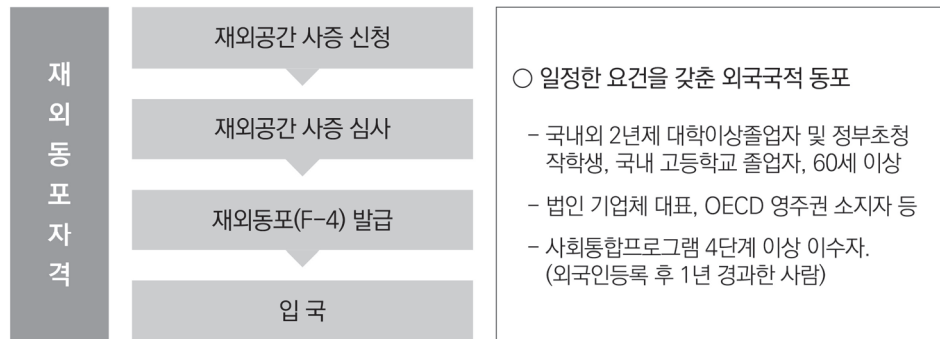
- 대한민국의 재외동포는 법적으로 개념적 규정이 되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 해외동포, 재외한인, 해외교포, 재외교포, 교민, 한인디아스포라, 한민족디아스포라, 코리안디아스포라 등의 다양한 호칭으로 혼용되고 있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모두 재외동포라 규정하고 있음

■ 재외동포(F-4)¹⁰⁾

- 대한민국은 재외동포에게 대한민국으로의 출입국과 체류 등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여 모국과의 관계 증진을 도모하고 모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은 1회에 부여하는 체류 기간의 상한은 3년 이내임
- 체류 기간의 연장은 가능하나 위법의 행위를 하는 경우 체류 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음
-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머무르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외국 국적 동포 영주자격(F-5-6)을 부여함

10)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사증발급 신청 등의 첨부서류 참조

- 외국 국적 동포 영주자격(F-5-6)의 체류자격은 대한민국 안에서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고 있음
- 재외동포(F-4)는 단순노무업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국내 단순노무직종 비취업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재외동포(F-4)의 사증발급절차는 다음 [그림 7]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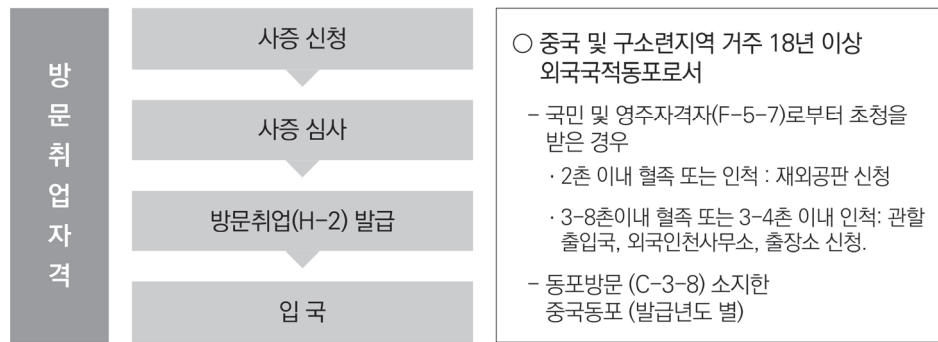


[그림 7] 재외동포 취업절차 흐름도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메뉴얼

■ 방문취업(H-2)

-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 및 기타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자신이 활동하고자 하는 경제활동에 맞는 사증을 발급받아야 함
- 대한민국 정부는 서방국가에 비해 소외되어 온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해 단순 노무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음
- 재외동포 정책과 외국인 인력정책의 혼합형 체류자격으로 단순기능 외국인력 체류자격의 하나로 할 수 있음
- 방문취업(H-2)의 사증을 발급 받으려면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한국어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1년 이내로 방문취업(F-2)의 사증이 발급됨
- 방문취업(H-2)의 대상자는 중국 및 중앙아시아 지역 동포에 한함
- 근로활동이 가능한 18세에서 60세 이하로 연령 제한을 두고 있음
- 방문취업(H-2)자는 3년간 대한민국으로 입출국이 가능한 복수 사증이며 연장하여 4년 10개월 까지 체류가 가능함
- 방문취업(H-2)의 사증으로 입국하는 재외동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해 제조업, 농축어업, 서비스업 등의 39개 업종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음
- 방문취업(H-2)의 사증발급절차는 다음 [그림 8]과 같음



[그림 8] 방문취업 사증 흐름도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메뉴얼

2) 충남 체류 재외동포(고려인) 현황

■ 충남 체류 중앙아시아·러시아 등록 외국인 지역별 현황

- 충남 체류 중앙아시아·러시아 지역으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연방), 키르기즈스탄, 한국계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벨로루시의 국적으로 충남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현황은 다음 [표 14]와 같음

[표 14] 충남 중앙아시아·러시아 등록 외국인 지역별 현황

(단위 : 명)

지역 \ 나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연방)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한국계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벨로루시	합계
계룡시	1	-	5	1	1	-	-	-	1	9
공주시	55	8	13	4	-	-	-	-	-	80
금산시	256	5	3	1	-	1	1	-	-	267
논산시	212	275	81	20	18	3	4	-	-	613
당진시	309	135	98	46	3	7	1	-	-	599
보령시	46	1	4	8	1	-	-	-	-	60
부여군	22	42	4	3	-	-	1	-	-	72
서산시	146	150	55	27	8	8	1	5	2	402
서천군	4	-	-	-	-	1	-	-	-	5
아산시	2,224	1,318	431	260	142	89	18	44		4,526
예산군	70	54	17	14	7	2				164
천안 동남구	498	82	78	44	19	12				733
천안 서북구	476	115	98	105	7	19	2			822
청양군	10	5	1	1			1			18
태안군	6	3	9	1						19
홍성군	62	55	52	14		13				196
합계	4,397	2,248	949	549	206	155	29	49	3	8,585

출처: 법무부(2020년 12월) 체류 자격별 등록 외국인 현황 재구성

■ 충남 재외동포(고려인) 등록 외국인 지역별 현황

- 충남에 가장 많이 체류 중인 재외동포(고려인 추정)의 국적으로는 우즈베키스탄 4,755명, 카자흐스탄 2,247명, 러시아연방 992명, 키르기즈스탄 590명, 우크라이나 226명 등으로 충남 체류 재외동포 등록 외국인은 9,047명으로 추정되고 있음

[표 15] 충남 등록 외국인 지역별 현황

(단위 : 명)

지역	나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연방)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한국계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벨로루시	합계
계룡시		1		5		1				1	8
공주시		55	3	4	3						65
금산시		251	5	6	6		1	1			270
논산시		248	290	92	14	22	2	3			671
당진시		334	148	106	50	3	7	2			650
보령시		45	1	4	7	1					58
부여군		20	37	4	7			1			69
서산시		155	140	63	30	11	8	1	4	2	414
서천군		5	-	-	-	-	1	-	-	-	6
아산시		2,456	1,217	455	283	153	85	26	49	2	4,726
예산군		84	36	19	15	5	1	-	-	-	160
천안 동남구		547	202	92	43	23	12	-	-	-	919
천안 서북구		491	106	95	105	6	20	1	-	2	826
청양군		10	4	1	1	-	-	1	-	-	17
태안군		7	3	7	1	-	-	-	-	-	18
홍성군		46	51	39	25	1	8	-	-	-	170
합계		4,755	2,243	992	590	226	145	36	53	7	9,051

출처: 법무부(2020년 12월) 체류 자격별 등록 외국인 현황 재구성

■ 충남 방문취업자 지역별 현황

- 2021년 5월 충남에 체류하고 있는 방문취업자는 397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방문취업자의 종류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많은 방문취업으로는 만기 방문취업이며 171명이 이에 해당됨

[표 16] 충남 방문취업자 지역별 현황

(단위 : 명)

지역 체류자격	계룡시	공주시	금산시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합계
H-2-5 (추첨방취)	-	4	4	16	22	2	2	19	44	8	55	2		10	188
H-2-6 (변경방취)	-	-	1	-	-	-	-	-	2	-	-	-	-	-	3
H-2-7 (만기방취)	-	1	-	11	18	-	4	21	42	12	51	2	-	9	171
H-2-51 (추첨방취)	-	-	-	-	-	-	-	-	1	-	-	-	-	-	1
H-2-52 (추첨방취)	-	-	-	3	-	-	-	-	5	-	1	-	-	-	9
H-2-71 (만기방취)	-	-	-	1	-	-	-	-	-	-	1	-	-	-	2
H-2-72 (변경방취)	-	-	-	1	-	-	-	-	4	-	-	-	-	-	5
H-2-99 (기타방취)	-	-	-	-	-	-	-	-	13	1	4	-	-	-	18
합계	0	5	5	32	40	2	6	40	111	21	112	4	0	19	397

출처: 법무부(2021년 5월) 체류 자격별 등록 외국인 현황 재구성

■ 충남 지역별 재외동포 동거(방문동거) 현황

- 충남 재외동포의 동거(방문동거)의 유형은 합법출생 자녀, 동포배우자 등 방문취업자녀, 4세대 이후 한시적 구제동포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음
- 지역별 재외동포의 동거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7]과 같이 나타나고 있음

[표 17] 충남 지역별 재외동포 동거(방문동거) 현황

(단위 : 명)

체류자격	지역	계룡 시	공주 시	금산 시	논산 시	당진 시	보령 시	부여 군	서산 시	아산 시	예산 군	천안 시	청양 군	태안 군	홍성 군	합 계
F-1-8 (합법출생자녀)		-	-	-	1	6			2	18	1	4	-	-	-	32
F-1-9 (동포배우자등)		-	1	3	7	14	1	1	19	53	11	58	1	2	9	180
F-1-11 (방문취업자녀)		-		1	10	9			10	35	6	27	-		3	101
F-1-21 4세대이후 한시적 구제동포)		-	-	-	-	-	-	-	-	1	-	-	-	-	-	1
합계		0	1	4	18	29	1	1	31	107	18	89	1	2	12	314

출처: 법무부(2021년 5월) 체류 자격별 등록 외국인 현황 재구성

2) 충남 체류 중도입국 자녀 현황

■ 충남 다문화 학생 유형별 현황

- 충남 다문화 학생은 국내 출생이 7,970명, 중도입국 학생 495명, 외국인가정 학생 1,529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초등학생 7,176명, 중학생 1,941명, 고등학생 877명으로 모두 9,994명으로 재학 중임

[표 18] 충남 다문화 학생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학교급			
시도	유형	학제계	초등	중등	고등
충남	국내출생	7,970	5,811	1,507	652
	중도입국	495	263	145	87
	외국인가정	1529	1,102	289	18
	소계	9,994	7,176	1,941	877

출처: 충남교육청(2020년 4월) 충남 다문화 학생 현황 재구성

■ 충남 지역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 충남의 다문화가정의 학생은 천안 295명, 아산 271명, 서산 95명, 논산계룡 77명, 홍성 76명, 당진62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천안 3.09%, 아산 5.11%, 논산계룡 5.80%, 홍성 5.26%, 당진 4.26%를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인구 대비로 살펴볼 때 청양 23.30%, 금산 11.93%, 예산 10.73%, 태안 7.89%, 공주 7.19% 순으로 전체학생 수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표 19] 충남 지역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단위 : 명(%))

지역	전체학생수	다문화가정 총계	비율
천안	9,544	295	3.09%
공주	1,029	74	7.19%
보령	920	32	3.48%
아산	5,300	271	5.11%
서산	1,848	95	5.14%
논산/계룡	1,328	77	5.80%
당진	1,457	62	4.26%
금산	285	34	11.93%
부여	427	34	7.96%
서천	190	16	8.42%
청양	176	41	23.30%
홍성	1,444	76	5.26%
예산	494	53	10.73%
태안	342	27	7.89%
총 합계	24,784	1,187	4.79%

출처: 충남교육청제공(2021년 4월 1일)

■ 충남 지역별 다문화 학생 현황

- 충남 지역별 다문화 학생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 출생 학생, 중도입국 학생, 외국인가정 학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음
- 충남 지역별 다문화 학생 중 국내 출생 학생으로 천안 207명, 아산 142명, 논산계룡 75명, 공주 70명, 서산 69명, 홍성 58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충남 지역별 다문화 학생 중 중도입국 학생으로 아산 6명, 천안 5명, 서산, 서천, 홍성 각각 2명, 공주, 당진, 예산은 각각 1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충남 지역별 다문화 학생 중 외국인가정 학생으로 아산 123명, 천안 83명, 서산 24명, 홍성 16명, 당진 15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0] 충남 지역별 다문화 학생현황

(단위 : 명(%))

지역	국내출생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천안	207	5	83
공주	70	1	3
보령	32	-	-
아산	142	6	123
서산	69	2	24
논산/계룡	75	-	2
당진	46	1	15
금산	30	-	4
부여	32	-	2
서천	14	2	-
청양	41	-	-
홍성	58	2	16
예산	47	1	5
태안	25	-	2
총 합계	888	20	279

출처: 충남교육청제공(2021년 4월 1일)

■ 충남 다문화 학생 학교별 현황

- 충남에서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지역이 많은 곳으로는 천안, 아산, 서산, 논산, 당진 지역임
- 지역별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을 살펴보면 천안 중도입국학생 156명, 외국인가정 학생 205명, 아산 중도입국 학생 122명, 외국인가정 학생 712명, 서산 중도입국 학생 48명, 외국인학생 102명, 논산 중도입국 학생 25명 외국인 학생 82명, 당진 중도입국 학생 31명, 외국인가정 학생 99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0년 4월 기준 충남 15개 시·군 중 계룡시를 제외하고 14개 시·군의 다문화 학생 학교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21]과 같음

[표 21] 충남 다문화 학생 학교별 현황

(단위 : 명)

시도	행정구역	학제	중도입국		외국인 가정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충남	천안시	초등학교	94	40	301	144
		중학교	42	23	85	39
		고등학교	20	9	33	22
		각종학교	0	0	0	0
		소계	156	72	419	205
	공주시	초등학교	4	4	9	3
		중학교	10	7	0	0
		고등학교	6	4	2	0
		소계	20	15	11	3
	보령시	초등학교	8	5	9	4
		중학교	2	1	1	1
		고등학교	2	0	2	1
		소계	12	6	12	6
	아산시	초등학교	65	37	532	251
		중학교	27	12	137	62
		고등학교	30	16	43	21
		각종학교	0	0	0	0
		소계	122	65	712	334
	서산시	초등학교	29	11	81	40
		중학교	18	10	19	4
		고등학교	1	1	2	1
		소계	48	22	102	45
	논산시	초등학교	9	6	32	15
		중학교	12	6	9	5
		고등학교	4	4	41	15
		소계	25	16	82	35
	금산군	초등학교	4	1	6	2
		중학교	2	1	0	0
		고등학교	0	0	1	1
		소계	6	2	7	3
	부여군	초등학교	4	3	0	0
		중학교	0	0	0	0
		고등학교	1	1	0	0
		소계	5	4	0	0
	서천군	초등학교	3	2	6	4
		중학교	2	1	1	1
		고등학교	2	1	2	1
		소계	7	4	9	6

시도	행정구역	학제	중도입국		외국인 가정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청양군	초등학교	1	1	0	0
		중학교	3	3	1	1
		고등학교	5	2	0	0
		소계	9	6	1	1
	홍성군	초등학교	6	2	28	14
		중학교	9	5	16	9
		고등학교	4	2	5	2
		소계	19	9	49	25
	예산군	초등학교	15	7	19	8
		중학교	6	4	3	0
		고등학교	3	1	1	0
		소계	24	12	23	8
	태안군	초등학교	8	3	3	0
		중학교	1	1	0	0
		고등학교	2	1	0	0
		소계	11	5	3	0
	당진시	초등학교	13	6	76	40
		중학교	11	6	17	5
		고등학교	7	5	6	1
		소계	31	17	99	46
충남	소계	초등학교	263	128	1,102	525
		중학교	145	80	289	127
		고등학교	87	47	138	65
		각종학교	0	0	0	0
		소계	495	255	1,529	717

출처: 충남교육청(2020년 4월) 충남 다문화 학생 현황 재구성

■ 충남 초등학교 외국인 학생

- 충남 중도입국 학생은 495명, 외국인가정 학생은 1,529명으로 2,024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충남 초등학교 외국인 학생은 중도입국 학생 263명, 외국인가정 학생 1,102명으로 1,365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2] 충남 초등학교 외국인 학생 현황

(단위 : 명)

구 분		초등학교						
시도	유 형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계
충남	중도입국	36	31	38	38	62	58	263
	외국인가정	196	231	175	188	159	153	1,102
	소계	232	262	213	226	221	211	1,365

출처: 충남교육청(2020년 4월) 충남 다문화 학생 현황 재구성

■ 충남 중·고등학교 외국인 학생

- 충남 중학교 외국인 학생은 중도입국 학생 145명, 외국인가정 학생 289명으로 434명이며 충남 고등학교 외국인 학생은 중도입국 학생 87명, 외국인가정 학생 138명으로 225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3] 충남 중등학교 외국인 학생 현황

(단위 : 명)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시도	유 형	1학년	2학년	3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소계
충남	중도입국	45	50	50	145	33	35	19	87
	외국인가정	113	96	80	289	60	38	40	138
	소계	158	146	130	434	93	73	59	225

출처: 충남교육청(2020년 4월) 충남 다문화 학생 현황 재구성

■ 충남 다문화 학생 비율

- 2021년 4월 기준 충남 전체 학생대비 다문화가정 학생은 유치원 24,784명 중 1,187명, 초등학교 118,555명 중 7,374명, 중학교 59,389명 중 2,414명 고등학교 56,165명 중 997명으로 각각 4.79%, 6.22%, 4.07%, 1.78%를 차지하고 있음
- 초등학교 학생의 비율이 가장 많고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체 학생 258,893명 중 11,974명이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4.63%를 차지하고 있음
- 충남 다문화가정의 학생으로는 국내출생,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가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충남 전체학생으로 유치원을 다문화 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표 24]와 같이 나타나고 있음

[표 24] 충남 전체학생과 다문화 학생비율

(단위 : 명(%))

학교급	전체학생수	다문화가정 학생 수	비율
유치원	24,784	1,187	4.79%
초등학교	118,555	7,374	6.22%
중학교	59,389	2,416	4.07%
고등학교	56,165	997	1.78%
총합계	258,893	11,974	4.63%

출처: 충남교육청제공(2021년 4월 1일)

■ 충남 다문화 학생 유형별 현황

- 충남 다문화 학생으로는 국내 출생 학생, 중도입국 학생, 외국인가정 학생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다문화 학생은 9,293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유형별로 국내 출생 학생 9,293명, 중도입국 학생 546명, 외국인가정 학생 174명임
- 국내 출생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결혼 하여 한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자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중도입국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외국인가정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5] 충남 다문화 학생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학교급	국내출생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유치원	888	20	279
초등학교	5,838	242	1,294
중학교	1,856	172	388
고등학교	711	112	174
총합계	9,293	546	2,135

출처: 충남교육청제공(2021년 4월 1일)

■ 충남 고려인 추정 외국인 학생 국적

- 고려인으로 추정되는 외국인학생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도입국 학생 49명, 외국인가정 학생 890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부모 출신국으로 살펴본 내용으로 [표 26]과 같이 나타나고 있음

[표 26] 충남 외국인 학생 부모 출신국 현황

(단위 : 명)

충남	계	부모 출신국		
		중앙아시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중도입국	48	11	13	24
외국인가정	890	259	290	341
소계	938	270	303	365

출처: 충남교육청(2020년 4월) 충남 다문화 학생 현황 재구성

제3절 국내 체류 이주민 정책

1. 이주민 지원정책 관련 법

1) 출입국관리법

■ 대한민국 출입관리¹¹⁾

-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외국인의 입국¹²⁾

- 대한민국에 입국 시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이 있어야 함
-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영주체류자격의 하나의 체류자격을 가져야 함

■ 외국인 출국¹³⁾

- 외국인의 출국심사, 출국정지, 재입국허가 등에 관한 사항 심사

■ 외국인 상륙¹⁴⁾

- 외국인의 상륙으로 승무원의 상륙, 관광상륙, 긴급상륙, 재난상륙, 난민임시상륙에 대해 허가할 수 있음

■ 외국인의 체류¹⁵⁾

-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 범위, 외국인의 고용제한 등과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외국인의 체류자격 등에 관한 사항

11) 출입국관리법 제1조. 목적

12)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호, 제10조1호~2호

13) 출입국관리법 제28조~제30조

14) 출입국관리법 제14조~제16조

15) 출입국관리법 제17조~21조

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뜻함¹⁶⁾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¹⁷⁾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함
- 외국인의 고용절차, 외국인의 고용관리,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 등에 대한 사항에 따라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짐

3) 다문화가족지원법

■ 결혼이주자로서의 다문화 가족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국적법의 제4조¹⁸⁾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다문화가정 자녀

- 결혼이주자 가정의 자녀
 - 대한민국 국적인 자와 혼인을 한 후 낳은 자녀
 - 대한민국 사람과 결혼한 외국 국적 배우자로 결혼 전 본국에서 한국으로 중도 입국하여 한국인 배우자에 의해 입양된 자녀가 이에 해당됨

4) 재외동포

■ 국내 입국 재외동포

-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동포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도 있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재외동포(F-4) 신청 가능함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16)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외국인 근로자의 정의

17)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18)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 재외동포자의 가족

- 재외동포의 가족 구성원으로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짐
-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 입국이 가능함
- 자녀는 만 18세가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으나 2019년 7월 2일 법 개정에 따라 2019년 9월 2일 이후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을 수 있음
-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 4세대 자녀가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체류를 위한 재외동포 (F-4)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제출해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단계 이상 이수증)
 - 한국어능력시험(TOPIK)1급 이상
 - 세종학당 초급 1B과정 이상 수료증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재외동포법의 규율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외국 국적 동포를 정의하고 있음
- 재외동포가 국내에 수월하게 입국하기 위함과 국내 체류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재외동포 모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
- 재외동포의 국내 출입국과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음

■ 재외동포법의 활동범위

-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 국적 동포의 취업
- 그 밖의 사회질서와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

■ 재외동포법의 활동범위 제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단순 노무행위
 -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 공공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지는 경우

6) 재외동포 재단법

■ 재외동포 재단법의 주요내용

- 한인의 정체성을 함양시키고 거주국 내에서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각종실태조사

■ 재외동포 재단법의 주요사업¹⁹⁾

- 재외동포 교류사업
- 재외동포 사회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사업 및 홍보 사업
-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7) 재외동포 재단의 주요사업

■ 교육사업

- 한글·역사·문화교육 활성화,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원
 - 한글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운영비 지원
 - 온라인 사이트 스테디코리안 운영
 - 현지 한글학교 교사연수 지원, 국내 초청 연수, 사이버 연수 등
 - 중국 조선족 학교 및 러시아·CIS 고려인 민족학교의 지원 및 초청 사업 시행

■ 교류지원사업

- 재외동포단체가 시행하는 교류활동을 지원
 - 거주국에서의 유권자 등록 등 권익과 정치력 신장을 위한 활동
 - 주류사회 및 소수민족, 커뮤니티와의 교류활동
 - 거주국 내 소외계층을 위한 안정적 정착사업
 - 국적회복을 위한 법률지원
 - 재외동포사회 안전유지사업 등을 중점 지원

■ 조사연구사업

- 글로벌 동포사회, 조사·연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실태 파악

19) 재외동포재단법 제7조. 재단은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한다.

- 재외동포사회의 현지 정착 수준 및 재외동포의 거주국과 모국의 상생 발전기여 역량 등 실태 파악

■ 차세대사업

- 한인사회의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리더 양성지원
 -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방문 및 모국 역사·문화 체험 활동 지원
 - 한인 인재 육성 사업 시행

■ 한상네트워크 사업

- 한민족 경제인네트워크 구축과 한민족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세계한상대회’ 개최

2. 재외동포 관련 법·제도 현황

1) 재외동포 관련 법 현황

■ 재외동포 관련 법

- 재외동포 관련정책은 법무부,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에서 정부조직법에 규정하여 각 부처의 소관업무에 맞게 수행하고 있음
-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는 법무부에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 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있음
- 재외동포 및 재외단체는 외교부와 교육부에서 각각 재외동포재단법과 고려인동포 합법적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련법령을 두고 있음
- 재외국민의 보호 및 서비스로는 외교부에서 재외국민을 위한 영사조력법, 재외국민등록법, 해외이주법, 재외공관공증법의 관련법령이 있음
- 여권업무는 외교부에서 여권법의 법령이 있음
- 재외동포 정책으로 재외동포 정책위원회에서 재외동포 정책위원회 규정을 관련법령으로 두고 있음
- 이렇듯 재외동포의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재외동포의 정의를 달리 규정할 수 있으며 부처별 재외동포에 대한 업무를 심의 조정하여 재외동포의 지원 등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재외동포관련 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요구됨

[표 27] 재외동포 관련 법 현황

구분	부처	관련법령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	법무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 관리법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 단체	외교부	재외동포재단법
	교육부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
재외국민 보호 및 서비스	외교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을 위한 영사조력법
여권업무	외교부	재외국민등록법, 해외이주법, 재외공관공증법
재외동포 정책	재외동포 정책위원회	여권법
		재외동포 정책위원회 규정

출처: 이주와 통합(2021), 재외동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18 재구성.

2) 재외동포 관련 제도

■ 재외동포 관련 업무

- 재외동포 관련 업무의 주관부처인 외교부는 재외동포 정책수립, 재외동포 육성 및 지원, 해외 사건 및 사고 재외국민 보호, 영사관계 문서의 공증 및 확인, 여권 및 입증 사건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함
- 재외동포의 소관부처는 법무부, 교육부, 문체부, 통일부, 고용부, 보훈처, 병무청에서 재외동포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법무부의 재외동포의 업무내용으로는 재외동포정책수립, 재외동포 육성 및 지원, 해외 사건 및 사고 재외국민 보호, 영사관계 문서의 공증 및 확인, 여권 및 입증 사건 등이 있음
- 교육부의 재외동포 업무내용으로는 재외동포 및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지원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표 28] 재외동포 관련업무 내용

구분	업무내용
주관부처	외교부
소관 부처	재외동포 정책수립, 재외동포 육성 및 지원, 해외 사건 및 사고 재외국민 보호, 영사관계 문서의 공증 및 확인, 여권 및 입증 사건 등
	법무부
	재외동포 출입국, 국내 체류시 법적 지위, 국적, 재한 외국인 정책
	교육부
	재외동포 및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지원 업무
	문체부
	문화, 예술, 체육 분야 교류사업
소관 부처	통일부
	통일정책 관련 교육 및 홍보
	고용부
	외국인 노동자, 해외취업 지원 및 해외진출 기업의 노무관리
소관 부처	보훈처
	독립운동 관리인사 초청, 교류사업
병무청	병역관리

출처: 이주와 통합(2021), 재외동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20 재구성.

3. 재외동포 정부지원 기관 현황

1) 재외동포 자녀의 체류허용 확대

■ 재외동포 자녀 체류 허용

- 재외동포 자녀의 입국 확대를 위한 조정이 이루어짐
- 2012년 4월부터 재외동포의 19세 미만에 대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장기 동반체류 허용됨
- 2014년 3월 재외동포 단기사증(C-3-8)의 도입으로 만 19세에서 24세의 동포 차세대들의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 가능
- 2019년 9월 2일부터 만 18세 이상 재외동포 4세대를 대상으로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하여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체류 가능
- 2020년부터 방문취업제 해당 연령층에 대하여 만 24세에서 만 18세로 조정함
- 중도입국 차세대들의 지역사회의 증가와 함께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 확대

[표 29] 재외동포 자녀의 체류허용 확대

개정 연도	개정 내용
2012년 4월	재외동포의 19세 미만에 대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장기 동반체류 허용
2014년 3월	재외동포 단기사증(C-3-8)의 도입으로 만 19세에서 24세의 동포 차세대들의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환경 조성
2019년 9월	재외동포 4세대를 대상으로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2020년	방문취업제 해당 연령층에 대하여 만24세에서 만18세로 조정

출처: 이주와 통합(2021), 재외동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23 재구성.

2) 재외동포 정부지원기관

■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지원 관리

- 대한민국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다양한 이민자의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기 위하여 부처별 교육지원이 이루어짐
- 고용허가제의 실시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지원 확대
-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
- 법무부에서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재외동포를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아님

[표 30] 재외동포를 위한 부처별 교육지원

지원부처	지원서비스
고용노동부	- 고용주 추가비용부담으로 하는 취업교육 실시 - 취업 및 문화 활동 지원 - 전용보험을 활용한 직무교육 등 실시 - 귀국 준비단계로 귀국 후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귀환교육 등 다양한 교육 실시
여성가족부	- 결혼이민자의 한국 입국 이후의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서비스지원
법무부	-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민자를 위한 정부지원 기관

- 재외동포를 위한 부처별 정부지원기관이 늘어나고 있음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등에서 한국체류 이민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음

[표 31] 이민자를 위한 정부지원 기관

집행기관	대상	관련동포체류자격	주요관련업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레인보우스쿨 (여가부 217개 기관)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자녀 외국인의 배우자	F-6, F-1 및 국민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통합지원
외국인력지원센터 (고용부, 39개 기관)	고용허가제 대상의 외국인 근로자	H-2	외국인 근로자의 적응지원을 통한 인력수급 원활화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법무부, 300 운영기관)	국적 및 영주자격취득 희망 외국인	F-2, F-1, F-4, F-5	이민자의 자립과 사회적응 지원
지자체별지원센터(58개 기관)	관내 외국계 주민(90일 초과 거주자)	일반 동포	관내 외국계주민의 한국사회 적응 지원
교육청 (레인보우센터)	학교, 교사,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다문화가정의 부모	F-1	다문화 학생 공교육 진입 및 적응 지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법무부 43개소)	동포 전체 외국인	모든 체류자격	외국인체류 허가 업무 이민자 사회통합(이민자 네트워크 지원, 이민통합지원센터 운영)
고용센터(고용부 95개 기관)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등	F-6, H-2 및 국민 고용주	결혼이민 - 알선, 교육, 취업성공패키지 등 외국인 근로자 - 고용허가제 관련 민원 외국인 근로자 - 고용허가제 관련 민원
중국동포체류지원센터(7개 기관)	중국동포	H-2, F-4, F-5, F-6 및 국적취득자	중국동포 체류지원

출처: 이주와 통합(2021), 재외동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25 재구성.

제4절 타 시도의 고려인에 대한 정착지원

1. 경기도

1) 경기도

■ 경기도 거주 고려인 지원 조례 제정

- 경기도 거주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
-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
- 고려인 주민의 실태조사
- 고려인 주민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시책
- 경제적 자립기반을 위한 지원
- 고려인 주민에 대한 차별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 고려인 주민 대상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실시

- 한국어 및 정보기술교육 등 교육 활동 지원

■ CIS 동포 자녀들의 교육과 보육 지원 강화

- 고려인 주민의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 및 영·육아 보육 지원
- 고려인 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 도내 고려인에 대한 모국문화 체험 활동 및 예술·문화 활동 지원
- 의료지원 사업
- 도내 고려인 집중 거주지에 대한 주거 및 환경 개선 사업
- 고려인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위탁 : 고려인 동포지원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이나 전문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 도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고려인 주민에 대한 포상 또는 명예도민으로 예우

2) 안산시

■ 안산시 고려인 지원 조례 제정

- 고려인 주민의 수 등 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
- 고려인 주민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시책 지원
-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 고려인 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등 고려인 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편의 제공, 고려인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 고려인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 고려인 주민의 자녀 돌봄 지원
-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
- 그 밖에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 고려인 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상담, 문화·체육 행사
- 고려인 주민 자녀의 교육·보육 지원 사업
- 고려인 주민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 시민의 고려인 이해, 내·외국인 상호소통 및 교류를 위한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 시장은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고려인 주민에 대한 포상

-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주민을 명예시민으로 예우

2.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거주 고려인 지원 조례 제정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 안전 도모
-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함

■ 고려인의 지위

- 고려인 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실태조사

- 관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수 등 고려인 주민 지원 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
- 고려인 주민의 정착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

■ 지원 사업

- 고려인 주민의 법적 지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 등
-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 고려인 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등 고려인 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편의 제공, 고려인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 고려인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 고려인 주민의 자녀 돌봄 지원
-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
- 고려인 주민의 취업 및 창업지원
- 고려인 관련 역사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업
- 고려인 주민 거주지역 환경개선사업
- 그 밖에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의 설치

- 고려인 주민 등을 위한 한국어 교육·상담 등
- 대한민국 국적취득 및 행정서비스 정보제공
- 고려인 주민 인권 보호 및 근로자 권익 보호 지원
- 고려인 주민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 고려인 주민 자녀 돌봄 지원 및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알선
- 고려인 주민 등을 위한 통역, 번역 지원
- 시민의 고려인 이해, 상호소통 및 교류를 위한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 지원

■ 기념행사 지원

- 기념식 및 문화, 예술, 체육행사
-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 그 밖에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등

■ 고려인 주민에 대한 포상

-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주민을 명예시민으로 예우

3.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거주 고려인 지원 조례 제정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 안전 도모
- 자립 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 마련
-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함

■ 고려인의 지위

- 고려인 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실태조사

- 관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수 등 고려인 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
- 고려인 집중 거주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 고려인 주민의 정착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

■ 지원 사업

- 고려인 주민의 법적 지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 등
-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 고려인 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등 고려인 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 고려인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 고려인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 고려인 주민의 자녀 돌봄 지원
-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
- 고려인 주민의 취업 및 창업지원
- 고려인 관련 역사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업

- 고려인 주민 거주지역 환경개선사업
- 그 밖에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의 설치

- 고려인 주민 등을 위한 한국어 교육·상담 등
- 대한민국 국적취득 및 행정서비스 정보제공
- 고려인 주민 인권 보호 및 근로자 권익 보호 지원
- 고려인 주민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 고려인 주민 자녀 돌봄 지원 및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알선
- 고려인 주민 등을 위한 통역, 번역 지원
- 시민의 고려인 이해, 상호소통 및 교류를 위한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고려인 주민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 고려인 주민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

■ 기념행사 지원

- 기념식 및 문화, 예술, 체육행사
-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 그 밖에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등

■ 고려인 주민에 대한 포상

-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주민을 명예시민으로 예우

4. 충청남도

■ 충청남도 거주 고려인 지원 조례 제정

-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 안전 도모
- 자립 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 마련
-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함

■ 고려인의 지위

- 고려인 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실태조사

- 관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수 등 고려인 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
- 고려인 집중 거주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 고려인 주민의 정착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

■ 지원 사업

- 고려인 주민의 법적 지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 등
- 경제적 자립기반을 위한 지원
- 고려인 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 이중언어 교사를 통한 교육사업 지원
- 고려인 주민의 자조모임 설립 지원
- 고려인 주민거주 지역 환경개선사업
- 고려인 주민의 자녀 돌봄 지원 및 영·유아 보육 지원
-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
- 고려인 주민을 위한 모국문화 체험 활동 및 예술, 문화·체육행사 지원
- 의료지원 사업

- 고려인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 고려인 주민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시에 거주지 환경 또는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소외되는 고려인 주민이 없도록 방문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 마련

■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의 설치

- 고려인 주민 등을 위한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교육·상담 등
- 대한민국 국적취득 및 행정서비스 정보제공
- 고려인 주민 인권 보호 및 근로자 권익 보호 지원
- 고려인 주민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 고려인 주민 자녀 돌봄 지원 및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알선
- 고려인 주민 등을 위한 통역, 번역 지원
- 시민의 고려인 이해, 상호소통 및 교류를 위한 사업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고려인 주민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 고려인 주민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

■ 고려인 주민에 대한 포상

-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주민을 명예시민으로 예우

제3장

연구 방법

제1절 연구대상 선정 및 분석

제2절 연구내용



제1절 연구대상 선정 및 분석

1. 연구대상 선정

1) 충남 체류 고려인

■ 연구대상 지역

- 충남의 15개 시·군 중 고려인 재외동포의 분포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였음
- 이에 따라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논산 지역을 선정하였음
- 연구 대상자 선정으로는 지역의 다문화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이루어짐
- 선정과정에서 지역별 고려인의 체류 분포를 고려하였음

2) 한국어 교육기관 한국어교원 및 교사

■ 연구대상 지역

- 본 연구의 면담 대상자의 선정 지역과 같은 지역의 한국어 교육기관의 한국어교원과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따라서 아산, 서산, 당진, 논산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공주 지역의 한국어교원도 선정하여 인터뷰가 이루어짐

3) 재외동포(F-4), 방문취업(F-1)의 취업기관

■ 연구대상 지역

- 본 연구의 면담 대상자의 선정지역과 같은 지역의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의 취업기관을 선정하였음

2. 연구대상별 질문 구성

1) 충남 체류 고려인

■ 충남 체류 고려인의 질문내용

- 질문은 고려인 부모와 자녀로 나누어 이루어짐
- 재외동포 중 고려인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에서의 지속적인 체류를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는지를 바탕으로 질문을 구성하였음

- 한국에서 직장 생활 중 한국어 부족으로 나타나는 어려움, 직장 내 안전교육의 유무와 관련된 사항
- 한국어 부족으로 안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2) 한국어 교육기관 한국어교원 및 교사

■ 한국어 교육기관 한국어교원 및 교사의 질문내용

- 충남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고려인의 배우자, 자녀의 한국어 교육 참여, 교육 시 한국어의 이해정도, 적극적인 한국어 교육의 참여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면담방법 및 절차

- 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논산 지역의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심층면접 기간은 2021년 9월 3일~9월 14일까지 이루어짐
- 면접대상자가 편하게 답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짐
- 의도된 질문 외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한 경우 추가질문을 진행하였음

3) 재외동포(F-4), 방문취업(F-1)의 취업기관

■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의 취업기관의 질문내용

-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대상자들의 안전 교육과 관련 내용으로 구성됨

3. 연구대상별 면담 방법 및 절차

1) 충남 체류 고려인

■ 충남 체류 고려인의 면담방법 및 절차

- 기본적으로 문헌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졌음
- 문헌조사는 충남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실태 파악 및 체류 고려인에 대한 지역별 현황
- 외국인이 한국 입국 후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정부부처의 지원서비스 검토
- 심층면접은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논산 지역의 연구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고려인과 고려인 자녀에 대한 심층면접 기간은 2021년 7월 25일 부터 8월 15일까지 이루어짐
- 심층면접은 면접 대상자가 편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졌음
- 의도된 질문 외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한 경우 추가질문을 진행하였음
- 한국어의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러시아어로 된 설문지를 제시하여 이루어졌으며 한국어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고려인이 통역을 하여 진행됨

2) 한국어 교육기관 한국어교원 및 교사

■ 면담방법 및 절차

- 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논산 지역의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심층면접 기간은 2021년 9월 3일~9월 14일까지 이루어짐
- 면접대상자가 편하게 답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짐
- 의도된 질문 외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질문을 진행하였음

3) 재외동포(F-4), 방문취업(F-1)의 취업기관

■ 면담방법 및 절차

- 기업체는 방문과 전화 면담이 함께 실시되었음
- 기업체 면담기관 선정은 아산 1곳, 당진 1곳, 논산 2곳을 선정하였음
- 면담 기간은 10월 4일 ~ 10월 12일까지 이루어짐

4. 연구분석 틀 구성

1) 충남 체류 고려인

■ 면담 대상자 별 면담 항목

-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동반가족(F-1)부모와 자녀로 구분하여 질문이 구성되었음
- 기본사항으로 국적, 나이, 성별, 체류자격, 한국 체류기간, 한국에서의 동반 가족 등으로 구성
- 그러나 이들이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어의 사용으로 한국어에 대한 질문 내용은 비슷하게 구성되었음

2) 한국어 교육기관 한국어교원 및 교사

■ 한국어 교육기관 한국어교원 및 교사 면담 항목

- 기본사항으로 나이, 성별, 한국어 교육 경력 등으로 구성
- 한국어 교육과정의 참여와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이해, 한국사회의 적응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됨
- 한국어 교육기관 한국어교원 및 교사가 바라보는 한국어 교육 시 외국인으로서의 재외동포만의 특이사항 등

3) 재외동포(F-4), 방문취업(F-1)의 취업기관

■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의 취업기관의 면담항목

-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의 취업기관에서의 언어사용
- 취업기관에서의 안전한 취업환경 구성을 위한 안전교육
- 안전교육 시 교육언어 등

제2절 연구내용

1. 면접대상자별 면담 항목

1) 충남 체류 고려인

■ 충남 체류 고려인의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

-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한국체류 고려인 동반가족(F-1)으로서 부모, 한국체류 고려인 동반가족(F-1)으로서 자녀의 공통질문
 - 한국 입국 전 한국어 교육 경험 유무
 - 주변사람들과 대화 시 사용하는 언어
 - 한국어 부족으로 주변사람들과의 대화 시 어려움
 - 가정에서의 대화 언어
-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의 직장에서의 안전교육
 - 직장 내 안전 교육 경험 유무
 - 안전 교육의 내용
 - 안전 교육 언어
 - 안전 교육 시 한국어 부족의 문제
-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한국체류 고려인 동반가족(F-1)으로서 부모의 한국에서의 삶의 연장을 위한 노력
 - 한국에서 지속적인 체류를 원하는지의 유무
 -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삶을 위한 한국어 교육
 - 한국에서 자녀와 함께 생활한다면 자녀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
 - 한국에서 지속적인 체류를 위한 노력
- 한국체류 고려인 동반가족(F-1)으로서 부모
 - 자녀의 학교생활의 어려움
 -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한 노력으로 부모의 역할
 - 자녀의 한국인 친구의 부모와의 소통정도
 - 자녀의 학교교육에서 부족한 것
 - 자녀의 학교생활적응과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
- 한국체류 고려인 동반가족(F-1)으로서 자녀의 질문 구성
 - 한국어 부족으로 친구들과의 대화 시 중단 경험

-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
-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
- 학교에 이중언어(러시아)선생님 유무
- 한국 입국 초기에 이중언어(러시아)선생님의 도움 경험
- 이중언어(러시아)선생님과의 수업진행 시간
- 이중언어(러시아)선생님과의 수업이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
- 학교에 한국어 선생님 유무
- 한국어 선생님의 도움 경험
- 한국어 선생님의 수업 진행 시간
- 한국어 선생님의 수업이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

[표 32] 재외동포 대상별 인터뷰

대상	인터뷰 세부항목
공통	- 한국입국 전 한국어 교육 경험 유무 - 주변사람들과 대화 시 사용하는 언어 - 한국어 부족으로 주변사람들과의 대화 시 어려움 - 가정에서의 대화 언어 - 한국에서 지속적인 체류를 원하는지의 유무 - 한국에서 지속적인 체류를 위한 노력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 직장 내 안전 교육 경험 유무 - 안전 교육의 내용 - 안전 교육 언어 - 안전 교육 시 한국어 부족의 문제 -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삶을 위한 한국어 교육 - 한국에서 자녀와 함께 생활한다면 자녀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
한국체류 동반가족(F-1) 부모	- 가정에서의 대화 언어 - 자녀의 학교생활의 어려움 -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한 노력으로 부모의 역할 - 자녀의 한국인 친구의 부모와의 소통정도 - 자녀의 학교교육에서 부족한 것 - 자녀의 학교생활적응과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
한국체류 동반가족(F-1) 자녀	- 한국어 부족으로 친구들과의 대화 시 중단 경험 -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 -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 - 학교에 이중언어(러시아)선생님 유무 - 한국 입국 초기에 이중언어(러시아)선생님의 도움 경험 - 이중언어(러시아)선생님과의 수업진행 시간 - 이중언어(러시아)선생님과의 수업이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 - 학교에 한국어 선생님 유무 - 한국어 선생님의 도움 경험 - 한국어 선생님의 수업 진행 시간 - 한국어 선생님의 수업이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

■ 면담 대상자의 특이사항

- 재외동포의 한국체류 동반가족(F-1) 부모 면담자의 수가 적어 재외동포(F-4)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와 함께 동반 거주하는 경우 인터뷰 항목에 자녀교육에 대한 내용도 함께 추가하여 면담이 이루어졌음

2) 한국어 교육기관 한국어교원 및 교사

■ 한국어 교육기관 한국어교원 및 학교 교사의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

- 한국어 교육기관의 한국어교원
 - 한국어 교육과정의 참여와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이해, 한국사회의 적응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됨
 - 한국어 교육기관 한국어교원 및 교사가 바라보는 한국어 교육시 외국인으로서의 재외동포만의 특이사항 등
- 학교 교육기관의 교사
 - 학교에서의 한국어 강사와 이중언어(러시아)강사 유무
 - 학교에서 한국어 강사와 이중언어(러시아)강사 채용 조건 등
 - 한국어 강사와 이중언어(러시아)강사의 수업 시수
 - 고려인학생의 한국어 향상에 한국어 강사와 이중언어(러시아)강사가 미치는 영향

3) 재외동포(F-4), 방문취업(F-1)의 취업기관

■ 재외동포 (F-4), 방문취업(H-2) 취업기관의 인터뷰 내용

- 취업기관에서의 그들의 사용 언어
- 취업기관에서의 안전교육 실시여부
- 안전교육 시 교육 언어
- 안전 교육 시 통·번역 사항
- 안전교육의 정기적 시행
- 안전교육 내용

제4장

연구 결과

제1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제2절 한국체류를 위한 노력

제3절 재외동포 고려인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수요



제1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1. 충남 체류 재외동포 고려인 대상별·지역별

1) 대상별·지역별 분포

■ 대상별 분포

- 충남 체류 고려인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지역별 인터뷰 대상자를 10명 내외로 골고루 선정하고자 노력하였음
- 그러나 면접 대상자의 사정에 의해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음
- 동반가족(F-1-9)은 방문동거라고도 하며, 동반가족(F-1-9)은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의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을 뜻하며, 배우자와 자녀가 이에 해당됨
- 동반가족(F-1-9)으로 배우자와 자녀는 복수 사증이 가능함
- 면접대상자 중 동반가족(F-1)의 배우자인 경우 3명이 면접 대상자임
- 이는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며 자녀의 동반이나 중도입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의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 또한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동반가족(F-1-9)자녀는 부 또는 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의 동반가족(F-1)으로 배우자는 1인이며 이 경우 러시아 국적의 남성임

[표 33] 연구 대상별·지역별 재외동포

(단위: 명)

지역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동반가족(F-1)부모	동반가족(F-1)자녀	합계
아산	3	4		4	11
천안	6	3	1	2	12
서산	6	1		1	8
당진	4	5	2	7	18
논산	2	2		5(1명f-4)	9
합계	21	15	3	19	58

2) 일반적 특성

■ 재외동포(F-4)

-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연구 참여자는 21명이며 아산3명, 천안 6명, 서산 6명, 당진 4명, 논산 2명임
- 국적별 분포를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 14명, 카자흐스탄 4명, 러시아 2명 키르기즈스탄 1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성별은 여자 12명, 남자 9명임
- 한국 체류기간은 2년부터 14년까지 나타나고 있음
- 동반가족은 주로 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홀로 생활하는 재외동포도 4명으로 나타남

[표 34] 연구 대상자 재외동포(F-4)의 일반적 사항

면접 대상자	거주지역	성별/연령	출신국가	한국 체류기간	동반가족
A1	아산	여/34	우즈베키스탄	8년	남편, 자녀2명
A2	아산	남/36	우즈베키스탄	2년	없음
A3	아산	여/46	카자흐스탄	3년	남편, 자녀3명
A4	천안	여/35	우즈베키스탄	10년	엄마, 오빠, 자녀1명
A5	천안	남/38	우즈베키스탄	11년	엄마, 부인, 자녀2명, 동생
A6	천안	여32	우즈베키스탄	5년	남편, 자녀3명
A7	천안	남/46	우즈베키스탄	14년	부인, 장모님, 자녀1명
A8	천안	남/37	우즈베키스탄	2년	부인, 아들
A9	천안	여/40	우즈베키스탄	5년	남편, 자녀2명
A10	서산	남/37	우즈베키스탄	3년	부인, 자녀2명
A11	서산	여/34	우즈베키스탄	3년	남편, 자녀2명
A12	서산	남/47	카자흐스탄	4년	없음
A13	서산	남/63	우즈베키스탄	12년	없음
A14	서산	남/60	카자흐스탄	4년	없음
A15	서산	남/43	키르기즈스탄	5년	부인, 자녀2명
A16	당진	여/36	러시아	3년	남편, 자녀3명, 시부모님
A17	당진	여/41	우즈베키스탄	5년	남편/자녀2명
A18	당진	여/34	카자흐스탄	3년	남편 자녀2명
A19	당진	여/42	러시아	3년	자녀2명
A20	논산	여/40	우즈베키스탄	4년	남편, 자녀1명
A21	논산	여/36	우즈베키스탄	3년	남편, 자녀1명

■ 방문취업(H-2)

- 방문취업(H-2)로 입국한 연구참여자는 15명으로 아산 4명, 천안 3명, 서산 1명, 당진 5명, 논산 2명임
- 국적별 분포를 살펴보면 카자흐스탄 7명, 우즈베키스탄 6명, 우크라이나 1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성별은 남자 7명, 여자 8명임
- 한국 체류기간은 2년부터 14년까지 나타나고 있음
- 동반가족은 주로 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홀로 생활하는 재외동포도 2명으로 나타남

[표 35] 연구 대상자 방문취업(H-2)의 일반적 사항

면접 대상자	면접 지역	성별/연령	출신국가	한국 체류기간	동반가족
B1	아산	남/33	카자흐스탄	2년	없음
B2	아산	남/36	카자흐스탄	5년	부인, 자녀2명
B3	아산	남/50	카자흐스탄	8개월(재입국)	부인, 자녀1명
B4	아산	여/40	카자흐스탄	2년 5개월	남편, 자녀4명
B5	천안	여/34	카자흐스탄	4년	남편, 자녀1명
B6	천안	남/33	카자흐스탄	7개월(재입국)	부인
B7	천안	남/60	우크라이나	7년	부인, 자녀3명
B8	서산	여/60	우즈베키스탄	5년	자녀2명, 손주2명
B9	당진	여/35	우즈베키스탄	3년	부인, 자녀3명, 부모님
B10	당진	여/25	우즈베키스탄	2년	남편
B11	당진	남/31	우즈베키스탄	2년	부인
B12	당진	여/35	우즈베키스탄	4년	남편, 자녀2명
B13	당진	여/46	카자흐스탄	10년	없음
B14	논산	남/46	우즈베키스탄	11년	부인, 자녀1명
B15	논산	여/44	우즈베키스탄	4년 6개월	부모님, 동생

■ 동반가족(F-1, 배우자)

- 동반가족(F-1)으로 입국한 연구 참여자는 3명으로 천안 1명과 당진 2명으로 나타남
- 국적별 분포를 살펴보면 러시아 1명, 카자흐스탄 2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6] 연구 대상자 동반가족(F-1, 배우자)의 일반적 사항

면접 대상자	면접 지역	성별/연령	출신국가	한국 체류기간	동반가족
C1	천안	남/43	러시아	6년	부인, 자녀2명
C2	당진	남/32	카자흐스탄	4년	부인, 자녀2명
C3	당진	여/40	카자흐스탄	3년	남편, 자녀3명

■ 동반가족(F-1, 자녀)

- 공식적인 체류자격은 동반가족(F-1-9)이며 이들은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의 자격을 취득한 자의 자녀임
- 특이 사항으로 재외동포(F-4)의 자녀로 한국에서 동반가족으로 (F-1-9)으로 체류하다 2019년 9월 재외동포 4세대를 대상으로 재외동포(F-4)의 비자 발급으로 한국에 입국한 사례도 1명이 나타나고 있음
- 동반가족(F-1, 자녀)로 입국한 연구참여자는 19명으로 아산 4명, 천안 2명, 서산 1명, 당진 7명, 논산 5명임
- 국적별 분포를 살펴보면 카자흐스탄 5명, 우즈베키스탄 8명, 러시아 5명, 키르기즈스탄 1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성별은 남자 10명, 여자 9명임
- 한국 체류기간은 1년부터 6년까지 나타나고 있음
- 동반가족은 주로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모와 함께 생활하거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도 있음

[표 37] 연구 대상자 동반가족(F-1, 자녀)의 일반적 사항

면접 대상자	면접 지역	성별/연령	출신국가	한국 체류기간	동반가족
D1	아산	여/11	카자흐스탄	1년	부모
D2	아산	남/16	우즈베키스탄	5년	부모, 동생1명
D3	아산	남/15	카자흐스탄	5년	부모, 동생1명
D4	아산	여/12	우즈베키스탄	3년	부모, 동생2명
D5	천안	남/14	러시아	3년	모
D6	천안	여/12	우즈베키스탄	2년	모, 언니
D7	서산	여/12	러시아	3년	부모, 동생1명
D8	당진	여/10	러시아	3년	부모
D9	당진	남/14	우즈베키스탄	6년	부모, 동생1명
D10	당진	남/14	러시아	2년	부모, 조부모, 동생2명
D11	당진	남/14	카자흐스탄	1년	부모, 동생1명
D12	당진	남/12	키르기즈스탄	5년	부모, 누나1명
D13	당진	남/10	카자흐스탄	3년	부모, 형1명, 동생1명
D14	당진	여/18	우즈베키스탄	2년	모, 동생1명
D15	논산	여/17	우즈베키스탄	2년	부모
D16	논산	남/9	우즈베키스탄	4년	부모, 누나1명
D17	논산	남/9	우즈베키스탄	3년	부모, 동생1명
D18	논산	여/14	카자흐스탄	3년	부모, 동생1명
D19	논산	여/17(f-4)	러시아	3년	부모, 언니1명

2. 충남 체류 재외동포 교육기관의 한국어교원 및 교사

1)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재외동포 배우자(F-1)의 한국어 교육기관

■ 한국어 교육기관 한국어교원

-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재외동포 배우자(F-1)의 한국어 교육과정 참여 정도와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과정 이해와 한국사회이해과정 이해 정도
- 한국어 교육 시 재외동포만의 특이사항 등으로 한국에서의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변경을 위해 한국어 교육의 필요사항에 대한 질문 등으로 구성하였음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충남 제3거점기관의 한국어교원 3명과 일반 운영기관 한국어교원 2명을 대상으로 면담이 이루어짐

[표 38] 한국어 교육기관 한국어교원의 일반적 사항

면접대상자	면접지역	성별/연령	소속기관	직책
E1	논산	남/48	건양대학교	한국어교원
E2	논산	여/52	건양대학교	한국어교원
E3	논산	여/57	건양대학교	한국어교원
E4	공주	남/51	공주대학교	한국어교원
E5	공주	여/55	공주대학교	한국어교원

2) 재외동포 자녀(F-1)의 학교 교육기관

■ 재외동포 자녀의 학교 교육기관의 교사

- 충남의 초등학교 7곳의 6명의 교사와 1명의 사회복지사, 중학교 1곳의 교사, 고등학교 1곳의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이 이루어짐
- 충남의 초등학교 선정으로는 아산, 천안, 서산, 당진, 논산지역의 다문화정책학교를 우선 선정하였으며, 천안과 논산은 재외동포 자녀들이 있는 일반 학교 2곳을 선정하여 일반 학교에서의 재외동포자녀(F-1)에게 지원되는 한국어 교육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음
- 또한, 당진 합덕의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도 함께 면담이 이루어졌음.
- 재외동포자녀(F-1)의 한국어능력 정도와 학교적응 및 또래관계 형성 등을 위한 노력으로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교원의 지원과 이중언어 강사의 지원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한 면담이 이루어짐

[표 39] 학교 교육기관 교사의 일반적 사항

면접대상자	면접지역	성별	소속기관
F1	아산	남	신창초등학교
F2	천안	여	신부초등학교
F3	천안	여	성정초등학교
F4	서산	남	차동초등학교
F5	당진	여	합도초등학교
F6	당진	남	합덕중학교
F7	당진	남	합덕고등학교
F8	논산	여	동성초등학교
F9	논산	여	부창초등학교

3.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의 취업기관

■ 취업기관에서의 면담자

- 충남에서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의 취업기관으로 아산 1곳, 당진 1곳, 논산 2곳을 선정하였음
- 이 중 3곳은 제조업체이며, 1곳은 농산물 재배지임
- 취업기관 2곳은 관리자의 면담이 실시되었고 2곳은 대표와 면담이 이루어졌음

[표 40] 취업기관의 면담자의 일반적 사항

면접대상자	면접지역	성별	직책
G1	아산	여	관리자
G2	당진	남	대표
G3	논산	남	대표
G4	논산	남	관리자

제2절 한국체류를 위한 노력

1. 재외동포의 한국어 교육 배경

1) 충남 체류 재외동포 면담참여자

■ 한국 입국 전 한국어 교육 경험

- 이들은 대부분 조부모 중 모두, 혹은 1인이 한국인으로 재외동포 3세대로 나타나고 있음
- 한국어를 가정에서 사용한 경험도 있으나 이는 매우 미약한 상황으로 이들은 러시아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도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학교에 다녔음
- 이들이 주로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취업기관과 가정에서의 대화 시 러시아어를 사용한다고 함
-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고려인의 한국입국 전 한국어 교육 경험을 살펴보면 연구에 참여한 재외동포(F-4) 21명 중 8명은 한국 입국 전 3개월에서 6개월 한국어 교육을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13명은 한국어 교육 경험이 없다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 연구에 참여한 방문취업(H-2) 고려인의 한국 입국 전 한국어 교육 경험을 살펴보면 연구에 참여한 방문취업(H-2) 15명 중 1명은 3개월 한국어 교육을 받았으며 1명은 선교사와 다니면서 한국어 익혔으며, 13명은 한국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2) 한국 입국 후 한국어 교육경험

■ 한국 입국 후 한국어 교육경험

- 연구에 참여한 재외동포(F-4)는 한국 입국 후 한국어 교육에 대하여 17명이 교육조건이 다르기는 하지만 한국어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을 하였음
- 교육은 시간이 되는 곳에서 이루어졌으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한국어능력시험에 참여, 인터넷을 활용하여 자신의 시간에 맞게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였음
- 또한, 방문취업(H-2)의 경우 한국 입국 후 한국어 교육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가 11명이었으며, 4명은 주말에 한국어 교육 경험이 있다고 하였음
- 동반가족(F-1, 배우자)인 경우 한국 입국 전·후 모두 한국어 교육 경험이 없음
- 동반가족(F-1, 자녀)의 경우 한국 입국 시부터 지속적인 한국어 학습과 한국어 활용을 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 진입으로 인해 한국 체류기간 동안 꾸준히 학습되고 있음

[표 41] 한국 입국 전·후 한국어 교육경험

구분	입국 전 한국어 교육경험	입국 후 한국어 교육경험
재외동포 (F-4)	- 8명 3개월~6개월 한국어 교육 경험 有 - 13명 한국어 교육 경험 無	- 7명, 한국입국 후에도 한국어 교육 경험 없으며 회사에서 사람들과 이야기 하면서 배움 - 2명,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하여 3단계 이수 - 1명, 5단계 이수 - 1명,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 2명, 인터넷으로 한국어를 배움 - 4명, 2개월~3개월 한국어 배움 - 4명, 시간이 있을 때 한국어 공부를 함
방문취업 (H-2)	- 1명 3개월 한국어 교육 경험 有 - 1명 선교활동을 하면서 한국 선교사들과 다니며 한국어 익힘 - 13명 한국어 교육 경험 無	- 11명, 한국어 교육 경험 무 - 4명, 주말에 한국어 교육 3개월~1년
동반가족 (F-1, 배우자)	- 3명 모두 한국 입국 전 한국어 교육경험 無	- 3명 모두 한국 입국 후 한국어 교육경험 없음
동반가족 (F-1, 자녀)	- 10명 한국어 교육 경험 有 - 9명 한국어 교육 경험 無	- 한국 입국 후 학교 진입 후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과 활용

2.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1) 직장생활 언어

■ 직장동료와의 대화 시 사용언어

-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고려인은 직장에서 주로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함께 사용한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영어를 사용하여 한국인과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었음
- 한국어의 어려움으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 이들은 한국인과 대화 시 먼저 직장에 다니고 있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대화를 하였음

■ 한국어 부족으로 직장동료와의 대화 시 어려움

- 직장동료와 대화 시 듣기는 가능하지만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답변이 많음
- 대화가 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였음
- 또한, 직장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익숙하여 알아듣지만 그 외의 질문에 대하여는 못 알아듣는다는 답변이 많았음
- 직장동료와의 대화 시 어려움에 대한 답변으로는 다음과 같음

[표 42] 직장동료와의 대화 시 어려움

면담자	면담내용
A1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어려움 없어요.
A4	물건을 찾거나 할 때에는 알 수 없어요.
A5	한국말 잘 못해서 일하는 말만 알아요. 다른 말 잘 몰라요
A6	많이 어려워요. 단어 많이 몰라요. 반장님하고 이야기 할 때 잘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도와줘요.
A12	처음에 어려웠어요. 계속하는 말은 잘 알아요. 그러나 다른 말은 잘 몰라요.
A17	듣는 것은 잘 들어요. 그렇지만 말하는 것은 몰라요.
B1	이해할 수 있지만 말 할 수 없어요.
B6	잘 몰라서 핸드폰으로 번역기 찾아봐요. 그리고 말해요
B7	다른 사람 도움도 받고 딸의 도움도 받아요. 딸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이에요. 그래서 딸이 많이 도와줘요.

2) 직장 내 안전교육

■ 직장교육 언어

-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의 직장에서 안전 교육 시 교육언어로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였으며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음
- 주로 한국어로 교육이 이루어지며 동료들 간 언어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으나 정확한 전달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 PPT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어, 또는 러시아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 직장에서의 안전 교육

-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은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이들의 직장 내 안전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중요한 직장 내 안전 교육에 대하여 재외동포(F-4)는 21명 중 8명이 안전교육 경험이 없고, 방문취업(H-2)는 7명이 안전 교육의 경험이 없다고 함
- 안전 교육의 내용으로는 화재 발생 시 대피방법, 사고 발생 시 대처사항 그리고 현장에서의 안전복장 착용에 대하여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현장에서의 안전한 작업지침으로 작업환경에 따른 사항을 교육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안전 교육 언어는 주로 한국어로 이루어지며 서로 통역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으며 통역사의 통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 안전 교육은 스크린으로 PPT를 활용하여 러시아어나 영어로 쓰여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함

[표 43] 직장 내 안전 교육

구분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직장 내 안전 교육 경험 유무	- 14명, 안전교육 경험 유 - 8명, 안전교육 경험 무	- 8명, 안전교육 경험 유 - 7명, 안전교육 경험 무
안전 교육 내용	- 화재 발생 시 대처사항 - 사고 시 대처사항 - 안전복장 착용	- 화재 발생 시 대처사항 - 사고 시 대처사항 - 안전복장 착용 - 현장에서의 안전한 작업지침
안전 교육 언어	- 한국어 - 영어 - 러시아	- 한국어 - 영어 - 러시아
안전 교육 시 한국어 부족의 문제	- 통역사를 활용 - 함께 일하는 사람이 통역	- 통역사를 활용 - 함께 일하는 사람이 통역

3) 가정에서의 대화언어

- 재외동포(F-4) 4명, 방문취업(H-2) 2명은 가족이 함께 한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으며 그 외 재외동포(F-4) 17명, 방문취업(H-2) 13명은 가족이 함께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 이들의 가정에서의 언어는 주로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음
- 또한, 이들은 거주지가 서로 밀접한 지역에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주요 언어는 러시아어라고 할 수 있음

4) 한국에서의 삶을 위한 노력

■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체류

- 재외동포(F-4) 21명과 방문취업(H-2) 15명 모두 한국에서 지속적인 체류를 원하고 있으며 이들은 한국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한 노력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 그러나 주중에 일을 하고 주말에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주말에 교육하는 곳이 많지 않아 이에 대한 어려움도 나타내고 있음

■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삶을 위한 한국어 교육

-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은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삶을 위해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모두 답변하였음
- 한국어 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으며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은 같은 답변을 하였음
-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면 한국에서 좀 더 편하게 살수 있다고 하였음

-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돈 많이 벌어야 하고 집도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음
-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좀 더 공부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를 바란다는 답변도 있었음

[표 44] 지속적인 삶을 위한 노력

면담자	면담내용
A1	한국 사람과 의사소통을 위해 매우 중요해요.
A2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 한국어 모르면 불편해요. 한국어 알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A6	말할 때 힘들어요. 그래서 더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딸 공부할 때 알아야 해요.
A8	애들 가르치고, 직장에서 일할 때 필요해요.
A9	한국에서 살고 계속 남아 있고 싶어요. 애들과 함께 한국에서 지내고 싶어요.
A20	일 많이 해야 돼요. 비자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그래서 한국문화 공부해야 돼요.
B7	한국에서 살려면 문화, 역사 알아야 해요.
B8	돈 많이 벌고 일도 많이 하고 집 사고 살고 싶어요.
B11	한국 국적 받으려면 한국어, 한국문화 필요해요.

■ 한국에서 자녀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

-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면접대상자 중 6명을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음
- 이들은 자녀의 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자녀 교육을 위해 본인이 한국어를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일을 하기때문에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답변하였음
- 부모님의 한국어 부족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변도 있었으며 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음
- 자녀의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한국어의 부족과 자녀들보다 한국어가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답변도 있었음

[표 45] 자녀교육을 위한 노력

면담자	면담내용
A3	경제적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엄마가 한국어 더 잘 해야 해요.
A4	아이들 더 잘 키우고 싶어요. 좋은 사람 되면 좋아요. 한국어 한국문화 알고 싶어요. 시간 없어서 힘들어요. 걱정돼요.
A10	시간 없어서 공부 못해요. 왜냐하면 일하니까요. 주말에 공부하는 곳 있으면 하고 싶어요. 엄마 잘 해야 아이들 잘 할 수 있어요.
A20	애들이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은 원격수업이니까 공부하기 더 어려워요. 부모님 도움 받아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 잘 몰라요. 애들 공부시키기 어려워요. 도움 받을 곳이 필요해요.
B2	한국어 더 잘 하면 아이들 도와줄 수 있어요.

3. 동반가족 배우자(F-1)

1) 동반가족 배우자(F-1)의 생활언어

■ 주변 사람과의 대화 시 사용언어

- 동반가족(F-1, 배우자)이 거주하는 지역은 주로 같은 체류자격이 함께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들이 만나는 주변인 또한 러시아어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음

■ 자녀의 한국인 친구의 부모와의 소통정도

- 동반가족(F-1, 배우자) 3명 모두 자녀의 한국인 친구의 부모를 만나지 않는다고 함

■ 가정에서의 대화언어

- 동반가족 배우자(F-1)의 체류자격으로는 직장에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있음
- 면담에 참여한 3명이며 남자 2명은 주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하거나 일이 없으면 집에 머무른다고 하며 여자 1명은 집에서 아이를 돌본다고 하였음
- 이들의 가정에서의 사용언어는 모두 러시아어로 이야기한다고 함

■ 자녀의 학교생활 어려움

- 아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어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한국어 사용이 부모보다 잘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없다고 함
- 이러한 경우는 자녀가 한국에서 어린이집부터 다녔기 때문에 학교 입학 시 한국어 부족으로 어려움은 없었다고 함
- 그러나 본국에서 학교에 다니다 한국에 입국한 경우 한국어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고 함

■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한 노력으로 부모의 역할

-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중도 입국한 경우 자녀의 한국어 부족으로 나타나는 학교생활 부적응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
- 자녀에게 많은 교육을 시키고 싶지만 경제적인 여건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함

[표 46] 자녀 학교생활을 위한 부모역할

면담자	면담내용
C1	한국 아이들처럼 학원에 보내고 싶어요. 영어, 피아노, 미술 그런데 학원비 비싸서 힘들어요.
C2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아이들과 생활하기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 가고 있어요. 애들도 학교에 잘 다니고 한국친구들도 사귀었어요.
C3	한국어가 부족해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찾고 있어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서 걱정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노력하고 있어요.

■ 자녀의 학교 교육에서 부족한 것

- 한국어의 부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도 입국, 또는 외국인가정의 자녀로 친구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음
-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배정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 입국한 후 한국어 부족으로 교과수업 등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라 할 수 있음

■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과 또래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

- 동반가족(F-1, 배우자) 3명 모두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과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음
- 이는 부모 또한 한국어 부족으로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체류

- 동반가족배우자(F-1) 3명 모두 한국에서 지속적인 체류를 원하고 있으며 재외동포(F-4) 21명과 방문취업(H-2)자와 같이 한국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한 노력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음

■ 가정에서의 대화 언어

- 동반가족(F-1, 배우자)의 체류자격으로는 직장에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있음
- 면담에 참여한 3명 중 남자 2명은 주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하거나 일이 없으면 집에 머무른다고 하며 여자 1명은 집에서 아이를 돌본다고 하였음
- 이들의 가정에서의 사용 언어는 모두 러시아어로 이야기 한다고 함

4. 동반가족 자녀(F-1)

1) 동반가족 자녀(F-1)의 생활언어

■ 가정에서의 대화 언어

- 동반가족자녀(F-1) 19명 모두 가정에서의 사용 언어는 주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녀는 한국어의 사용을 가끔 하지만 부모님이 한국어의 부족으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음

■ 학교 친구들과의 대화 언어

- 학교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주로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답변이 19명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음
- 그러나 같은 국적의 친구들과는 러시아어로 대화를 나눈다고 함

■ 한국어 부족으로 친구들과의 대화 시 중단 경험

- 한국어의 부족으로 친구들과의 대화 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대화가 중단된다고 함
- 이는 한국어 어휘 부족으로 나타나는 현상임
- 가정에서 대화가 러시아어로 이루어지다 보니 한국어의 어휘 확장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 동반가족(F-1, 자녀) 19명이 모두 이와 같은 답변을 하였음

■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

- 학교에서 한국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지만 한국어 부족으로 대화에 참여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답변하였음
-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힘들어 한 경험을 이야기 했으며 한국 친구와 함께 대화하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함

[표 47] 동반가족자녀(F-1)의 친구 관계

면담자	면담내용
D2	친구들과 축구도 하고 싶지만 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친구와 놀지 않아요.
D4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친구들이 웃으면 따라 웃어요.
D7	모르는 말이 많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친구들이 나를 바보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2) 동반가족자녀(F-1)의 학교적응의 어려움

■ 한국어 부족으로 친구들과의 대화 시 어려움

- 학교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 어휘의 부족으로 친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 이는 한국에 입국한지 3년이 된 동반가족(F-1, 자녀)도 한국어 어휘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함

■ 학교생활의 어려움

-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수업시간에 수업 참여도 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함
- 이러한 원인이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며 친구들이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이며, 듣기가 가능하더라도 말하기가 되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생활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이야기 함

[표 48] 동반가족자녀(F-1)의 학교 적응의 어려움

면담자	면담내용
D1	친구들과 놀지 않고 혼자 있어요. 처음보다는 괜찮지만 지금도 조금 어려워요.
D2	모르는 것을 다시 물었어요. 자꾸 물으니까 친구가 싫어했어요.
D4	공부할 때 어려워요. 수학, 과학, 국어, 사회 다 어려워요. 단어 잘 몰라요. 음악, 미술, 체육 괜찮아요.
D8	공부할 때 할 수 없어요. 친구들 공부해요. 나는 그냥 있어요.
D15	다시 묻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묻지 않아요.

3) 언어교육

■ 한국어 선생님

- 학교에 한국어 선생님이 없다는 답변으로 3명을 제외하고는 한국어 선생님이 있었으며 한국어 수업 시간으로는 하루 1~2시간 정도 일주일에 3~4일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국어 수업 시간이 짧다는 답변으로 시간을 늘리면 좋겠다는 답변도 있었음
- 한국어 교육 대상자는 주로 한국 입국 초기의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49] 동반가족자녀(F-1)의 한국어 선생님

면담자	면담내용
D4	선생님은 일주일에 3~4시간 만나요. 우리는 매일 한국어 몰라서 공부 못해요.
D5	한국 온지 3년 되어서 수업하지 않아요. 수업시간에 모르는 단어 많지만 공부할 수 없어요.(D5)
D6	하루 1시간 공부해요. 도움이 안돼요. 매일하면 좋겠어요.
D13	한국어 공부시간 더 많으면 좋아요

■ 이중언어(러시아)선생님

- 학교에 이중언어(러시아)선생님이 없다고 6명이 답변하였음
- 이중언어(러시아)선생님이 있는 경우에도 수업에서의 도움은 2시간 ~ 4시간 정도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언어(러시아)선생님이 없는 경우에는 도움을 답지 못한다고 함
- 함께 수업하는 시간을 늘리면 좋겠다는 답변도 있었음
- 또한, 한국어로 말하고 러시아어를 조금밖에 모른다는 답변도 있었음

[표 50] 동반가족자녀(F-1)의 이중언어선생님

면담자	면담내용
D2	선생님은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과 수업해요. 저도 한국어가 많이 부족한데 우리는 하지 않아요.
D3	선생님 있어요. 한국말로 말해서 우리 잘 몰라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더 많이 도움 받아요.
D4	이중언어 선생님 있지만 러시아말 잘 몰라요. 우리 잘 못 알아들어요.
D6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공부 했어요. 지금은 안해요.
D10	한국어 모르니까 선생님 도움 많이 돼요.
D16	하루에 2시간 정도 해요. 다른 시간에는 잘 할 수 없어요.
D18	한국말 잘 모를 때 설명해 줘요. 도움 돼요.

5. 한국어 교육기관 한국어 교원 및 교사

1) 재외동포의 한국어 교육 참여

■ 사회통합프로그램 기관에서의 한국어 교육 참여

-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자들은 주중에 근로를 하기 때문에 주말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기관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음
-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재외동포 배우자(F-1)의 한국어 교육과정 참여 정도와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과정 이해와 한국사회이해과정 이해 정도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중 교육 참여의 열정이 부족함

- 한국에서의 체류자격 변경 등을 원하지만 수업 참여에 대한 열정 부족
- 이와 같은 이유로는 한국 입국 시 한국어능력 시험을 거치지 않고 입국한 것이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한국어교원의 답변이 있었음
- 한국어 교육 시 재외동포만의 특이사항 등으로 한국에서의 체류자격 변경과 축적변경에 대한 질문 등으로 구성하였음
 -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는 주중에 일을 하기 때문에 주중에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움이 있음
 - 충남 15개 시·군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주중에 이루어지며 주말에는 일부 과정을 제외하고는 운영이 되지 않음
 -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재외동포 배우자(F-1)가 참여 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은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임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는 코로나 이전 한국어 교육과정의 운영을 주말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2020년부터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음
 - 오프라인으로 직접 교육기관을 방문하였을 경우 교육 인원이 코로나 19 이후인 온라인보다 많았으나 온라인 수업으로 교육인원에 한정을 두어 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외국인의 교육 참여 인원에 제한이 되고 있음
 - 외국인의 교육 참여 인원 제한으로 한국어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외국인과 고려인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음

■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의 한국어 교육 참여도

- 2021년 9월 충남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기관 중 충남 제 3거점을 중심으로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의 한국어 교육 참여도를 살펴보았음
- 충남 사회통합프로그램 제3거점기관의 2021년 3학기 학생을 조사한 결과 0단계~5단계 과정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의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은 144명이며 이중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자는 11명으로 0.76%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 참가율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2) 재외동포 자녀의 학교 교육 적응을 위한 한국어 교육

■ 학교교육적응과 한국어 교육

- 충청남도 교육청은 다문화 학생, 중도입국 학생, 외국인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지원을 위해 한국어 강사를 다문화정책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 학교별 다문화 학생, 중도입국 학생, 외국인학생의 인원수에 따라 한국어 강사의 수업 시수의 지원이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어 강사의 담당업무는 다문화 학생, 중도입국 학생, 외국인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어 강사의 채용조건은 다음과 같음
 -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한 강사로 한국어교원이 있는 자를 우선으로 채용하고 있음
 -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또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으로 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외국인학생을 교육한 경력이 있는 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보육·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채용하고 있음
- 한국어 강사의 근무조건은 학교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 주 15시간 이내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어 교육 향상을 위한 이중언어 교육

- 충청남도 교육청은 중도입국 학생, 외국인학생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강사를 지원을 하고 있음
- 이중언어 강사의 역할은 외국인가정 학생의 한국어 교육 및 학교생활적응 교육, 학부모 상담을 위한 통·번역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중언어 강사의 지원은 한국 입국 후 1년 이내의 중도입국 학생, 외국인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시 언어 전달, 부모와의 상담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중언어 강사는 단독으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음
- 이중언어 강사의 근무시간은 학교 별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주 15시간 이내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 3~5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도 있음
- 이중언어 강사의 채용조건은 다음과 같음
 - 이중언어 강사의 자격은 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러시아어가 가능한 자를 우선 채용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외국어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한국어와 러시아어가 가능한 자로 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한국어를 잘 구사하는 결혼이주여성이 주로 이중언어 강사의 역할을 하고 있음

■ 학교 교육기관

- 한국어 강사는 다문화 학생, 중도입국 학생, 외국인학생에게 실질적인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짐
- 또한, 다문화 학생, 중도입국 학생, 외국인학생의 언어지원을 위해 이중언어 강사를 채용하여 언어지원을 받고 있음
- 한국어 강사와 이중언어(러시아)강사채용 유무
 - 다문화정책학교에는 한국어 강사와 이중언어(러시아)강사가 모두 있음

- 일반 학교에는 한국어 강사가 채용되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었음
- 이중언어(러시아)강사는 두 곳 모두 채용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51] 한국어 강사와 이중언어(러시아)강사 채용 유무

지역	학교	한국어 강사	이중언어(러시아)강사
아산	A초등학교	○	○
천안	B초등학교	○	○
천안	C초등학교	○	X
서산	D초등학교	○	○
당진	E초등학교	○	○
논산	F초등학교	○	○
논산	G초등학교	X	X
당진	A중학교	○	○
당진	A고등학교	○	○

- 한국어 강사와 이중언어(러시아)강사의 수업 시수
 - B초등학교, D초등학교, F초등학교, G초등학교는 한국어 강사의 주 수업 시간은 14시간, D초등학교 13시간, A중학교, A고등학교 주 8시간, C초등학교 6시간의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B초등학교, 차동초등학교는 이중언어(러시아)강사의 주 수업시간은 14시간, D초등학교 13시간, G초등학교 10시간, A고등학교 4시간, A중학교 1시간으로 이중언어(러시아)강사의 교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일반학교에서 한국어 강사와 이중언어(러시아)강사가 없는 경우에는 고려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조사한 일반학교에서는 방과 후 활동에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언어(러시아)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표 52] 한국어 강사와 이중언어(러시아)강사의 수업 시수

지역	학교	한국어 강사 수업 시수	이중언어(러시아)강사 수업 시수
아산	A초등학교	주13시간	주13시간
천안	B초등학교	주14시간	주14시간
천안	C초등학교	주6시간	X
서산	D초등학교	주14시간	주14시간
당진	E초등학교	주14시간	주8시간 (다른학교 지원 6시간)
논산	F초등학교	주14시간	주10시간
논산	G초등학교	X	X
당진	A중학교	주8시간	주1시간
당진	A고등학교	주8시간	주4시간

- 고려인 자녀의 한국학교 적응 및 한국어학습 향상에 한국어 강사와 이중언어(러시아)강사가 미치는 영향

[표 53] 한국학교 적응과 한국어학습 향상에 미치는 요소

한국어학습	이중언어(러시아어)지원
- 한국어의 빠른 습득에 영향을 줌 - 한국어의 습득으로 한국 학생들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서로 어우러짐을 가속화시킴 - 한국어의 두려움에서 해방감을 줌 - 한국어에 대한 두려움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음	- 학교교육과정에서 어휘부족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음 - 자신의 의견 전달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음 - 부모와의 상담지원에 도움을 줌 - 학교생활 규칙 등에 대해 익힐 수 있음

6.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의 취업기관

1) 취업 기관에서의 사용언어

■ 취업 현장에서의 사용언어

- 취업기관에서는 국적이 같은 사람들과는 고향 언어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취업기관에서 다른 외국인이나 한국 사람과는 한국어로 대화가 이루어지지만 주로 간단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음

2) 취업기관에서의 안전교육

■ 안전교육

- 취업기관에서는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취업기관에 따라 안전교육의 시점이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 취업기관에서의 안전교육은 주로 한국어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어가 부족한 자들은 한국어가 능숙한 같은 언어권의 노동자가 통역을 해주고 있으며 같은 언어권이 없는 기관에서는 몸짓언어를 사용하여 교육이 진행되기도 함
- 충남에서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의 노동자가 일하는 취업기관은 주로 소규모 사업장으로 언어별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제3절 재외동포 고려인의 한국어와 한국문화수요

1. 충남 체류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의 교육

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언어교육

- 한국어 교육
 -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이 아니더라도 외국인으로 한국어 교육을 원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교육시간이 주로 평일에 이루어지고 있어 직장에 다니는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은 한국어 교육의 참여에 어려움이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한국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음
- 통·번역 지원
 - 한국어가 부족한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은 통·번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통·번역사의 국적이 한정되어 있으며, 국가별 통·번역사가 없음
- 문해교육
 -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
 - 그러나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의 경우 주중에 시간이 되지 않아 교육을 받을 수 없음

■ 부모교육

- 방문교육
 -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 입국 초기 임신을 하거나 거리가 먼 경우 방문지도사의 방문으로 한국문화 교육에 재해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상담지원

- 가족상담
 -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부부,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 외 지원 프로그램

- 취·창업지원, 지역공동체일자리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공간운영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특성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2)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 기관에서의 한국어 교육 참여

-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도입취지
 - 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임
 - 재한외국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사회통합으로 표준화하고 이를 이수한 이민자에게 국적취득 필기시험을 면제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임
 - 이민자에게 꼭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정책의 개발과 세부지원 항목 발굴을 위하여 이민자의 사회적응지수를 측정하고 이민자지원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임
- 따라서 한국에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2021년 9월 충남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기관 중 충남 제 3거점을 중심으로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의 한국어 교육 참여도를 살펴보았음
- 충남 사회통합프로그램 0단계~5단계 과정에서 한국어를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은 144명이며 이중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자는 11명으로 0.76%를 차지하고 있음

■ 국적취득 및 체류자격 변경

- 재외동포(F-4)SMS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후 종합평가합격을 하는 경우 영주권 취득과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함
- 방문취업(H-2)의 경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단계별 이수에 따라 한국에 재입국 할 때 추가 점수가 부여되어 입국에 수월함

2. 충남 체류 동반(F-1)배우자, 자녀 교육

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언어교육

-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는 언어 교육지원이 한국어 교육으로 같게 이루어지며 근로로 인해 주중 참여에 어려움이 있음
- 동반(F-1-9)은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과는 다르게 근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교육 참여가 가능함
- 그러나 대부분의 동반(F-1-9)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언어교육을 받지 않고 있음

■ 자녀교육

- 한국어 교육
 - 한국어가 부족한 동반자녀(F-1-9)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중언어 교육
 -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반자녀(F-1-9)의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중언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언어발달지원사업
 - 한국어가 부족한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반자녀(F-1-9)의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중언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2)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 기관에서의 한국어 교육 참여

- 한국에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인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의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

■ 국적취득 및 체류자격 변경

- 재외동포(F-4) 또는 방문취업(H-2)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81점 이상 득점할 경우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음

제5장

충남 체류 고려인의 정착지원 방안

제1절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환경조성

제2절 재외동포 고려인 자녀교육의 중요성 인식

제3절 고려인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방안 마련



제1절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

1. 재외동포의 노동현장에서의 의사소통

1) 노동현장의 의사소통 원할

■ 노동현장에서의 언어교육 지원

- 고려인은 한국입국 시 한국어능력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입국함
-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의 고려인은 한국어 교육을 원하지만 주중에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의 과정이 사이버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도 있음
 - 주말에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관을 찾아 교육을 받으려 하지만 주말에 교육하는 기관이 적고 참여 인원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움이 있음
 - 주말에 교육하는 기관이 적고 인원수에 컴퓨터 활용공간 제공 및 인터넷 환경 조성 등
- 주말 한국어 교육이 진행되는 경우 한국어교원 지원
 - 한국어 교육은 주로 주말에 진행되어야 할 것임
 - 노동현장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에 컴퓨터 활용공간 제공 및 인터넷 환경 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노동현장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며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관은 인센티브 점수 부여

■ 5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통·번역 지원

-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의 노동현장은 주로 제조업이며 소규모 기업체가 대부분임
- 기업체에서의 안전교육이 의무화되고 있지만 안전교육 시 한국어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어가 부족한 경우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교육 시 통·번역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노동현장에서의 안전교육 지원

1) 노동현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 안전교육 이해부족

- 작업장에서의 안전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여부를 잘 이해하지 못해 자신이 안전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음
- 이러한 이유는 한국어의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동료의 설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동료 또한 한국어의 정확한 이해는 하지 못하고 설명을 해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2) 안전교육 지원 강화

■ 외국인노동자의 안전교육

- 직장에서 한국어를 몰라 위험을 감지하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음
- 안전교육을 받아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함
- 외국인의 안전사고는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
- 직장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통역을 통한 안전교육이 필요함
- 소규모 기업의 경우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언어 부족으로 안전교육의 내용 이해의 부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안전 교육의 실효성이 낮아짐
- 이러한 이유로 안전교육 지원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안전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임
 - 안전교육 시 정확한 전달을 위해 언어별 교육 자료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
 - 안전 교육은 매일, 매주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 교육시 통역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제2절 재외동포 고려인 자녀 교육의 중요성 인식

1. 재외동포 고려인 자녀 교육지원

1) 자녀의 교육환경 조성

■ 자녀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노력

- 자녀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노력으로 부모는 가정에서의 언어사용 시 한국어 사용의 확장이 요구됨
 - 자녀는 한국에서 학교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부모는 근로현장에서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이 필요함
 - 부모 또한, 자녀와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체류를 원한다면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의 교육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자녀의 한국 학교교육과 연관성이 매우 높음

■ 자녀와의 의사소통시간 확장

- 학교, 지자체, 지원 기관 등이 연계하여 고려인동포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의 정서적, 문화적, 교육적 정착 지원이 필요함
- 다양한 교육과 상담으로 자녀와의 소통 시간을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학교, 지자체, 지원 기관 등이 연계하여 고려인동포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의 정서적, 문화적, 교육적 정착지원이 필요함
- 다양한 교육과 상담으로 자녀와의 소통 시간을 확장이 요구 됨

2) 재외동포 고려인 자녀를 위한 학교 교육지원

■ 재외동포 고려인 자녀의 학교 교육지원

- UN아동권리협약
 - UN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 아동의 교육이 규정되어 있음
 - 국제조약이나 국제협약은 한국이 체결·비준한 경우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구속력을 가짐
 - 대한민국은 1991년에 UN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이 협약은 가입과 동시에 구속력을 가지며

- 이는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에 대한 협약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지 않음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한국어 교육
 - 현재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에 의거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어 지원을 위하여 개설된 과정이기 때문임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로 선정된 학교에서 14시간의 범위 안에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수업이 편성됨
 - 다문화 정책학교가 아닌 경우 수업 편성이 의무가 아니라 재량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시간이나 내용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한국어 교육은 UN아동권리협약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함
- 이는 국제질서 존중주의와 일치하지 아니함

■ 재외동포 고려인 자녀를 위한 한국어 강사 지원

- 재외동포는 한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라 할 수 있음
- 고려인 자녀는 한국어를 모르는 가운데 학교에 입학함으로써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한국어 부족으로 자존감이 낮아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 고려인 자녀를 위해 학급 배정 이전에 한국어 교사를 통해 일정 기간을 한국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교육 준비는 한국어 교사확대와 한국어 교육의 시간을 늘려야 할 것임
- 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에게 지원되고 있는 방문교육서비스를 재외동포 자녀에게도 지원확대 되어야 할 것임
- 한국어 강사 채용 인원의 확대가 요구됨
 - 한국어 교육 대상자의 권장 교육 시간은 1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학생들의 한국어 수업 시 1인으로 교육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룹으로 진행되고 있음
 - 그러나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시간은 10시간이 학습되고 있지 않고 있음
 - 이에 한국어 교육 대상자에게 권장 교육 시간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사 인원의 확대가 요구됨
- 한국어 강사의 학교 정규채용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한국어 교원 2급을 받기 위해서 대부분 한국어 석사 과정을 마쳐야 함

- 물론 사이버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어 강사 채용에서 석사 이상의 지원자를 채용하는 사항을 검토하여야 할 것을 요구 됨
- 한국어 교원의 교육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자의 선정으로 재외동포, 고려인 자녀에 대한 이해도가 교육 환경을 높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음

■ 재외동포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 강사 지원

- 현재 고려인 자녀를 위해 러시아어가 가능한 이중언어 강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이중언어 강사의 역할은 교사의 수업을 러시아어로 통역해 주는 수준임
- 학교에서 고려인을 위한 이중언어 강사는 대부분 결혼 이주 여성으로 기준은 학습 지도와는 관계없이 러시아어 가능자일 뿐임
 - 학교에서 이중언어 강사의 단독 수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중언어 강사는 학교 수업진행 중 보조교사의 역할로 수업 내용에 대한 전달 등 통역, 상담 등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이중언어교사는 러시아어로 학습을 교육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교육적 역할을 할 것임
- 유학생 출신 등 우수 인재를 이중언어교사로 채용하여 교육적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중언어 교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이 지원되어야 할 것임

2. 재외동포 고려인 자녀의 보육지원

1) 재외동포 고려인 자녀를 위한 보육지원

■ 대한민국 보육료 지원

- 영유아법 제34조에 따르면 영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지원의 대상과 기준에 따라 양육수당이 지급될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정한 보육료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으로 제한하고 있음
- 이에 한국 국적이 아닌 아동은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따라 보육사업 지침도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함’을 명시하고 있음

■ 재외동포 자녀의 보육료 지원

- 2021년 외국인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은 안산, 부천에서 보육료 지원이 되고 있음

- 보육료 지원은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게 지원되고 있음
- 그러나 모든 연령에 대하여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3~5세의 유아의 누리과정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음
- 서울시는 2021년 5월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 지원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청주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안산, 시흥, 부천, 포천 등의 보육료 지원 시범 지역을 선정하여 공립 유치원 307명, 사립 유치원 640명을 선정하여 947명의 외국인 자녀에게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공립 유치원은 8만원, 사립 유치원은 26만원의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타지역의 외국인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례

- 안산시
 - 안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와 2018년 안산시 고려인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제7조에 의해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이 201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지원내용으로는 만3세~5세 외국인가정 자녀가 어린이집에 등록 하는 경우 월 26~33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며 보육시간에 따라 상이하게 지원되고 있음
- 부천시
 - 2020년 3월부터 외국인 등록 누리과정 보육료 24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부천시는 부천시 외국인 아동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근거로 금융기관, 사회보장 정보원 등의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호자의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음
 - 보육료 지원 대상으로는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제출서류 발급이 가능하고 아이행복카드 발급 명의자와 아동이 모두 부천시에 체류하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함
 - 부천시는 외국인 자녀가 부천에서의 체류기간으로 3개월이 경과 한 외국인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부천시의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 지원은 외국인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내·외국인의 차별 없는 보육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 자녀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경기도 교육청
 -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안산, 시흥, 부천, 포천 등의 보육료 지원 시범 지역을 선정 하였음
 - 보육료 지원 선정 외국인 자녀는 공립 유치원 307명, 사립 유치원 640명을 선정하여 947명의 외국인 자녀에게 보육료 지원이 되고 있음
 - 공립 유치원은 8만원, 사립 유치원은 26만원의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충청남도의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한 의견

- 고려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5조의 8항에 따라 고려인 주민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 및 영유아 보육 지원에 대한 사항이 있음
-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단계적으로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재외동포 고려인 자녀의 돌봄지원

■ 재외동포 고려인 자녀의 돌봄지원

- 한국체류 동반체류(F-1-9) 자녀의 한국어 교육 및 전문 돌봄교육이 요구되고 있으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는 방과 후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나 한국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한국어 강사가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재외동포 자녀(F-1-9)에 대한 돌봄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임
- 당진에는 이러한 고려인 자녀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도담도담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고려인 자녀의 방과 후 과정과 돌봄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 아산의 신창 지역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고려인 자녀와 외국인자녀를 대상으로 학교가 끝난 후 교육과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와 같이 재외동포자녀(F-1-9)의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별 기관의 확대가 요구됨

■ 충남 지역별 외국인가정 자녀의 돌봄 지원

- 당진시
 - 고려인 자녀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도담도담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 고려인 자녀의 방과 후 과정과 돌봄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한국어 교사가 없이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언어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태임
- 아산시
 - 신창지역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고려인 자녀와 외국인자녀를 대상으로 학교가 끝난 후 교육과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어가 부족한 외국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이중언어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사와 이중언어 교사의 도움으로 돌봄과정과 학습과정이 함께 운영되고 있음
 - 이와 같이 재외동포자녀(F-1-9)의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별 기관의 확대가 요구됨

제3절 고려인을 위한 전문기관설치 및 운영방안 마련

1. 고려인의 정착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1) 재외동포 고려인지원센터 설치

■ 재외동포 고려인의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전문기관

- 충남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기관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3개 기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개 기관으로 시·군에 각 1개의 센터가 있으며 이 기관에서는 지역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기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천안, 아산, 당진, 서산에서 외국인 노동자 센터와 홍성의 이주민센터는 주로 교회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주로 주말을 이용해 외국인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근로상담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근로상담으로는 임금체불과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상담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 노동자 센터, 외국인 이주민 센터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외동포 고려인의 특이성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단, 아산시에서 분점으로 운영·지원되고 있는 신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지역적 특성으로 재외동포 고려인의 유입이 많아 신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주로 재외동포 고려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처럼 재외동포 고려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센터가 필요하며 이들의 한국사회적응과 교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재외동포 고려인의 지원센터 운영방안 마련

■ 재외동포지원센터의 운영

- 법무부는 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할 민·관 협의체 구성을 목적으로 2021년 5월 동포체류지원센터를 공모하였음
- 이에 2021년 7월 11개 기관이 지정되었으며 당진의 초록별교육사회적협동조합이 충남에서 유일하게 지정되었음
- 그러나 재외동포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러한 방안 마련을 위해 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됨

2. 재외동포지원센터의 운영지원

1) 재외동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부처별 운영지원

■ 여성가족부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충남에 15개의 운영기관으로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고 있음
 - 기관별로 차이는 있으나 사회복지사로 상주 직원이 있으며 특화사업을 담당하는 직원 또는 강사가 있음
 - 기관의 운영비와 직원의 임금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를 위해 방문지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법무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 충남에는 3개의 거점 운영기관과 18개의 일반운영기관으로 법무부의 지원을 받고 있음
 - 사회통합운영기관은 한국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사회이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법무부는 교육을 하는 한국어 강사와 다문화사회 전문가의 자격을 갖춘 한국사회이해 강사에 대한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음
 - 또한, 거점운영기관을 두어 일반운영기관의 교육지원 등을 하고 있음
- 재외동포지원센터
 - 법무부에서는 재외동포지원센터를 지정하였으나 기관 운영비 등 직원채용 등에 관해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재외동포 사업의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재외동포지원센터를 지정한 이유는 전문기관으로 재외동포 사업을 정착시키는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임
 - 자치단체는 재외동포지원센터가 전문기관으로서 지자체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비 등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2) 재외동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타 기관과의 비교

■ 안산 고려인 문화센터

- 고려인주민 및 시민의 이용공간으로 다양한 문화·교육프로그램,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 상담으로 노동과 법률 그리고 생활민원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고려인주민을 대상으로 동아리 및 커뮤니티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음

- 지원기관과 고려인 역사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음
- 고려인 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상담, 그리고 문화 체육행사가 진행됨
- 고려인 주민 자녀교육과 보육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시민의 고려인을 위한 이해 사업과 내·외국인의 상호소통 및 교류를 위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 광주 고려인 종합지원센터

- 의료지원사업, 근로자조합 사업, 서비스조합사업
 - 출입국 상담, 고충문제 상담, 법률 등
- 주민센터 운영
 - 2004년 9월 20여명의 고려인들의 공동체를 이룬 친교활동 시작으로 2009년 센터 운영 시작함
 - 새로이 입국하는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통·번역 실시
 - 미취업자들의 숙식제공과 취업 알선
 - 고려인의 각종 애로사항 등 해결
- 미취학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 2012년 맞벌이부부 고려인 가정의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 시작함
 - 고려인 자녀를 위한 한글교육과 어린이 학습, 운동, 문예활동지도
 - 고려인 자녀의 돌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자녀들의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아동센터 운영
 - 2013년 아동센터를 개소하여 고려인 학생(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방과 후 학습과정으로 영어, 수학, 예능 등의 학습지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고려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인천 고려인지원센터

- 설립목적
 - 국내거주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 체류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사회통합과 교류, 그리고 한국체류 지원과 상호협력력을 목적으로 함
- 한국어 수업
 - 성인 한국어 야학 및 아동의 방과 후 수업이 진행됨
 - 멘토와의 언어 및 돌봄 지원이 이루어짐
 - 한국어능력시험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함
 - 고려인의 한국어 습득을 지원하여 장기적인 체류와 적응에 기여 하고 있음

- 고려인 문화센터 교육사업, 상담사업, 전시관사업 지원
 -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방과 후 교실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설립목적전국 고려인 자조모임인 고려인 네트워크 지원
- 의료 및 생활 등 긴급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충남 재외동포지원센터

- 2021년 7월 당진에서 법무부 재외동포지원센터로 선정
 - 재외동포지원센터의 운영은 도담도담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진행 되고 있음
 - 재외동포지원센터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운영할 공간이 없음
 - 고려인 부모와 고려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이와 같은 이유로는 한국어 교사에 대한 수급이 부족하여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고려인 자녀를 위한 상담 운영
 - 한국에서의 토래관계 형성 부족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에 대해 상담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전문상담사의 상담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음
- 고려인의 협력을 위한 자조모임 강화
 - 고려인의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해 매주 고려인이 모여 고향의 전통춤을 추는 댄스동아리 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힘든 삶을 이겨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3) 재외동포지원센터의 운영지원

■ 재외동포지원센터 기관선정

- 재외동포지원센터로 지정되었으며 재외동포지원센터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조선족 지원, 고려인 지원, 또는 한국체류 재외동포의 지원 등이 이루어지는 기관으로 선정되었음
- 재외동포의 한국체류가 증가함에 따라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체류를 위한 기본적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이 요구됨
- 재외동포는 한국에서 지속적인 삶을 위해 노력하며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삶을 위한 노력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기관이 필요함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노력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이 절실히 요구됨

■ 재외동포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 법무부는 재외동포지원센터의 선정은 하였으나 운영비 지원은 되고 있지 않음

- 이는 기존 운영기관에 재외동포지원센터라는 명명으로 선정하였을 뿐이기 때문임
- 법무부의 이러한 선정은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재외동포만을 위한 전문지원센터로서의 역할에는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
- 고려인의 재외동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
 - 재외동포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과 공간 제공이 요구됨
 - 고려인과의 대화를 위해 통역지원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고려인의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에 고려인을 위한 재외동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지자체에서는 공간 제공, 관리자로서의 사회복지사 지원, 상담사지원, 통·번역사의 지원이 요구됨

■ 재외동포지원센터의 교육지원

- 고려인을 위한 교육지원으로는 한국어 교육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 이를 위해 한국어 강사 채용으로 고려이니 부모와 자녀의 언어교육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자녀의 돌봄 지원으로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일 자녀의 한국어 교육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4) 지역민과의 화합

■ 지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장 마련

- 고려인동포 간 자조모임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한 정체성 확립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확립을 위한 봉사활동 및 공공사업 추진
- 언어 및 문화교류를 위한 한국인과 고려인의 멘토 멘티 구성
- 취미동호회 등의 활동 지원

■ 지역에서의 문화행사 개최

- 지역문화제 등과 연계하여 선주민과의 소통 및 유대 강화
- 고려인의 문화축제 등 지원하여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며 다양한 교류로 소통의 장 마련으로 정서적 안정 도모
- 선주민과 이주민의 소통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상호 간 인식 개선 마련 가능
- 세계인의 날과 한국의 명절 그리고 고려인의 특별한 날 등에 대한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민과의 문화교류의 장 마련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제언



제1절 결론

1. 충남 체류 고려인의 유입 증가

1) 충남 체류 고려인의 유입

■ 고려인의 이주

- 재외동포의 이주 현상은 1990년대 초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단위의 이주가 늘어나고 있음
- 교통수단의 발달로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초국가주의를 불러오며 소련붕괴 이후 단절되었던 중앙아시아의 재외동포들의 입국이 증가하고 있음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재외동포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주를 시작하였으며 대한민국에서의 지속적인 체류를 원하고 있음

■ 고려인의 재외동포 체류자격별 입국 형태

- 재외동포(F-4)
 - 대한민국에서 지속적인 체류를 위해 한국어 교육이 요구됨
 - 모국과의 관계증진으로 재외동포(F-4) 자격이 부여되어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며 동포임이 입증되면 재외동포(F-4)로 입국이 가능함
 - 이러한 이유로 한국으로 입국하는 재외동포(F-4)는 주로 3세대, 4세대로 입국을 하고 있음
 - 이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한국어의 부족으로 근로현장에서 근로안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방문취업(H-2)
 - 재외동포의 단순기능 체류자격으로 경제활동 등의 목적으로 입국함
 - 한국어 능력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받아 경제활동을 하며 체류기간 연장을 하며 근로활동을 함
 - 이후 재외동포(F-4)로 사증변경을 하거나 고향으로 돌아간 후 한국어 능력을 입증하여 방문취업(H-2)으로 3년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재입국이 이루어지기도 함
- 방문동거 배우자(F-1)
 -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의 가족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근로는 하지 못하며 가족 간의 결합 형태를 유지하여 살아갈 수 있음

- 방문동거 자녀(F-1)
 -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의 가족으로 한국에 중도 입국한 형태로 학교에 다니고 있음
 - 방문동거 자녀(F-1)의 충남 체류 현황은 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청소년의 경우 학교 진학을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하여 생활하기도 함

2) 충남 체류 고려인 현황파악

■ 고려인 재외동포의 체류자격별 현황

- 고려인 재외동포와 자녀 거소신고
 - 외국인이 재외동포자격으로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는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야 함
 -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함
 -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국내거소신고 한 재외동포가 거소신고한 국내거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소지의 시, 군, 구나 관할출입국 외국인관서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 재외동포 현황파악의 어려움
 - 한국 입국 최초 1회의 거소신고는 거소지관할에 거소신고를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등록지 체류 재외동포에 대해 알 수 없음
 - 또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관할출입국 외국인관서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하면 지역별 재외동포 현황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2020년 8월 충남 체류 등록 외국인인 61,810명이며 충남 전체 체류 외국인인 119,303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등록 외국인인 체류자격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류자격별로 고려인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이는 체류자격별로 나타나기 때문에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방문동거(F-1)의 경우이며 국적이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으로 된 경우에 파악할 수 있음
- 재외동포 실태조사 실시
 - 현재 충남 체류 외국인으로 국적별 체류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고려인 현황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유형별 거주형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현재 충남 체류 외국인으로 국적별 체류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고려인 현황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충남 체류 재외동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2. 충남 체류 고려인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노력

1) 충남 체류 고려인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확대

■ 고려인의 근로현장에서의 안전을 위한 한국어 교육

- 재외동포 고려인의 안전한 근로를 위한 한국어 교육
 -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있던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이에 해당됨
 - 이에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재외동포는 3세대나 4세대이며 근로를 목적으로 입국함
- 재외동포 고려인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 이들은 한국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입국을 하지만 고려인 재외동포들과 함께 어우러져 타운을 형성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한국어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근로현장에서 한국어의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벗어나기에 어려움이 있음
- 근로현장의 안전교육 시 통역사 지원
 - 기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어의 부족으로 교육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 교육 시 통역사 지원 확대

2) 재외동포 자녀의 교육과 보육지원

■ 재외동포 고려인 자녀의 학교교육

- 재외동포 고려인의 자녀교육의 어려움
 - 이들은 한국에 정착하면 가족을 초청하여 함께 거주하며 가족단위의 이주형태를 이루며 살아감
 - 따라서 고려인 자녀는 중도입국이 이루어지며 한국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고려인 자녀는 한국어의 부족으로 또래관계의 형성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학교 생활적응에도 어려움이 있음
- 한국어 강사와 이중언어 강사 지원확대
 - 한국어 강사와 이중언어 강사는 주로 다문화 정책학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한국어 강사와 이중언어 강사의 지원확대가 요구되며 한국어 강사의 채용확대와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학교에 상주하는 한국어 강사를 채용하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이중언어 강사에 대한 보수교육 등이 요구됨

■ 재외동포자녀의 보육지원

- 재외동포 자녀의 보육료 지원
 -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운영지침에 따라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외동포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이는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음이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타 시도의 사례를 제시하여 재외동포의 자녀에게도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고자 함

■ 충청남도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 지원

- 타 시도의 사례를 제시하여 재외동포의 자녀에게도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고자 함
- 충청남도의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충남 체류 고려인을 위한 고려인지원센터 운영 마련

■ 고려인을 위한 전문기관 운영

- 법무부는 당진에 고려인지원센터를 선정하였으나 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고려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관심과 운영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재외동포지원센터의 교육지원

- 재외동포 고려인 지원센터로서 재외동포, 방문취업, 동반비자의 체류자격을 가진 고려인과 그들의 자녀가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체류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언어지원, 자녀 돌봄지원,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상담 지원 등 한국에서의 체류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외동포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제2절 제언

1. 충남 체류 고려인의 실태조사

1) 충남 체류 고려인 실태조사

■ 충남 체류 고려인의 현황파악 시급

- 충남 체류 고려인의 현황파악
 - 충남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 요구됨
 - 충남 체류 고려인의 실태조사는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로 구축할 수 있음
 - 고려인의 경제상황, 가족관계, 생활양식, 가족문제, 서비스 수요 등 충남 체류 고려인의 실태에 대한 파악이 요구됨

■ 충남 체류 고려인의 환경변화에 따른 실태수요 파악

- 충남 체류 고려인의 이동과 정착에 필요한 요구 등 파악 필요
 - 충남 체류 고려인의 체류자격별 현황 파악으로 이들의 생활을 파악할 수 있음
 - 충남으로의 정착과정과 이들을 위한 정책 요구 등에 반영할 수 있음

2) 충남 체류 고려인 근로자의 정착지원

■ 고려인의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

- 충남 체류 고려인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한국어 교육지원이 요구됨
 - 근로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안전교육의 실시과정에서 언어부족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이 요구됨
 - 한국 입국 시 동포라는 이유로 한국어 능력을 입증하지 않고 입국하였기 때문에 한국 부족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근로현장에서 안전교육 시 통역사 지원

- 언어부족으로 안전 교육 시 언어부족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역사 지원
 - 근로 현장에서 분기별 또는 월 별 안전교육 시 통역사 지원이 요구됨

2. 충남 체류 고려인의 교육 및 보육지원

1) 고려인 자녀를 위한 언어교육 확대

■ 고려인 자녀를 위한 한국어 강사 지원 확대

- 한국어 강사의 채용 확대
 - 고려인 자녀의 한국어 부족으로 학생 생활의 부적응과 또래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음
 - 현재 한국어 강사의 한국어 수업 시간은 주 14시간 이내로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어 교육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음
 - 한국어 교육 대상자의 권장 교육 시간은 1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룹 수업으로 한국어 수업의 부족으로 언어부족 현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한국어 강사를 다문화 정책학교에서 뿐 만 아니라 일반학교로도 확대지원
 - 이에 한국어 교육 대상자에게 권장 교육 시간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사 인원의 확대가 요구됨
 - 또한 한국어 강사를 종일제 기간제 교사로의 채용 검토가 요구됨
- 이중언어 강사의 전문성확보
 - 이중언어 강사의 역할은 수업 시 언어 전달 등의 보조교사의 역할, 부모와의 상담, 통역 지원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중언어 강사는 단독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음
 - 이중언어 강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 사항을 근거로 채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또한, 이중언어 강사의 보수교육이 분기별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고려인 자녀를 위한 한국어 연장교육 필요

- 입국 1년 이상 고려인 자녀도 한국어 교육 필요
 - 한국어 강사의 한국어 지원을 받고 있는 고려인 자녀 및 중도입국자는 1년 이내의 입국자를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에 입국 한지 1년이 지났어도 한국어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음
 - 한국 입국 2년 이내의 고려인 자녀 및 중도입국 자녀에게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이 요구됨

2) 고려인 자녀를 위한 보육료 지원

■ 고려인 자녀를 위한 보육료 지원

- 충남 체류 고려인의 자녀양육을 위한 보육료 지원이 요구됨

-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동반체류(F-1)의 자녀의 보육료는 그들의 상황에서는 매우 큰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복지국가 충남의 지양과 함께 고려인 자녀의 양육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타 지역의 사례를 바탕으로 충남에서 보육료 지원 활성화가 되어야 할 것임

3. 재외동포 고려인을 위한 전문기관

1) 재외동포 고려인지원센터 운영

■ 재외동포지원센터 기관선정

- 재외동포 고려인을 위한 운영기관 확보
 - 2020년 7월 충남 당진에서는 재외동포지원센터로 선정되었음
 - 재외동포는 한국에서 지속적인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류를 위한 지원기관으로 필요함
 - 재외동포의 한국체류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교육이 요구되고 있음

■ 재외동포 고려인을 위한 고려인지원센터역할

- 재외동포 고려인지원센터의 역할
 - 고려인지원센터에서는 고려인의 한국체류를 위한 지원
 -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삶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 확대 실시
 - 중도입국 고려인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 방과 후 돌봄 지원
 - 고려인의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노력
 - 자조모임 활성화 마련
 - 지역민과의 화합을 위한 노력으로 지역에서의 문화 행사 개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재외동포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요구

■ 재외동포 고려인을 위한 고려인지원센터운영 지원

- 재외동포 고려인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마련
 - 재외동포지원센터로 지정만 되었을 뿐 운영비 지원이 없음
 - 재외동포지원센터의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 재외동포지원센터에서는 고려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자녀의 방과 후 돌봄의 역할이 함께 병행되어지고 있으나 전문자격을 갖춘 자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재외동포 고려인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 지원 요구

- 재외동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 운영인력과 공간 제공, 통역지원서비스, 상담서비스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에 재외동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이 요구됨

참여 연구진

연구 책임	윤 향 희	책임연구원
-------	-------	-------

내부 연구진	김 용 현	연구위원
	김 진 영	책임연구원
	홍 은 일	연구원
	김 소 연	연구원